위례지구 A1-5BL(17단지), A1-12BL(15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위례지구 A1-5 및 12BL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현장을 공개하지 않으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A1-5BL의 대표평면인 66A, 75A, 84A, A1-12BL의 대표평면인 64A, 74A, 84A만 운영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방문시 방문인원은 최소화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각종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자 등 관련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콜센터(1600-3456)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으로, 본인의 청약자격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1.1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공고문은 문화일보, 한겨레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코로나19로 견본주택 현장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사이버 모델하우스(www.i-sh.c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1-5BL은 66㎡,75㎡,84㎡, A1-12BL은 64㎡,74㎡,84㎡만 운영하며 **A1-5BL의 대표평면인 66A,75A,84A, A1-12BL은 64A,74A,84A만 운영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례A1-5BL은 "위례포레샤인 17단지", 위례 A1-12BL은 "위례포레샤인 15단지"로 명칭하며 본 공고문에는 블록명으로 ("위례A1-5BL", "위례 A1-12BL")기재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공급 관련 팸플릿은 **2020.11.19.(목) 15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분양수납부에서 배부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전자 팸플릿은 **2020.11.19.(목) 15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팸플릿은 한정된 수량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해당단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우선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이며 **재당첨제한(10년) 적용주택**입니다.
- 위례지구는 향후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업추진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분양단지를 포함한 단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40호, 2020.09.15.)에 의거 건축공정률 60%를 초과한 이후에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옵션제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중 하나에 해당하여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최하층을 우선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고령자 세대 및 장애인 세대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의 세대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세대, 장애인 세대에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분양되는 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고(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시 중복당첨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람.), 일반분양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본 공고문에서 '세대에 속한 자'라 함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시: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 및 분양권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2호)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등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분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분은 금회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하여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청약자격(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소득 · 자산요건,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사에서 전산검색,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청약자격을 확인한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기간에 해당 청약자격이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접수방법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및 접수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의 『주택형』 또는 『형』 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 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동 · 호수 배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 내에서 공급유형별, 향별, 층별, 동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추첨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 · 호수 발생 시에도 동 · 호수 변경 불가)
- **특별 및 일반공급(제1 · 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로 전산관리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는 **거주지 · 연락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주민등록표등본 ·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름 및 연락처 기재, FAX 02-3410-7515 발송 후 전화확인) 주소 및 연락처 변동사항 미고지로 인한 공급대상 제외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타인 명의로 가입된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해제)되고,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불법행위 이익의 3배 금액이 3천만원 초과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이 부과되며,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주택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주택법」 제65조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계약취소(해제)되는 경우 주택분양계약에서 규정한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명단관리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 여부, 자산 · 소득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주택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필요한 제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 및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 **금회 청약에 사용하는 입주자저축 계좌를 청약신청 이후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로 인해 청약사실 누락 또는 순위확인서 발급불가로 당첨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까지 계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공사가 최초 실거래 신고한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관련 증빙은 별도로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계약시 별도 안내예정)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금회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12.16.)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됨.** 또한 전매제한기간 내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단,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4(제73조 제1항 관련)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포함)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지 않는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매제한 기간 및 입주의무, 거주의무 일람표

지구	블럭	전용면적 (㎡)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전매제한기간	최초 입주가능일	거주의무기간
위례A1 (택지개발)	5	66	2020.12.16.	10년	2021.08.(예정)	5년
		70				
		75				
		80				
		84				
	12	64				
		74				
		84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함.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봄.
-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관련 법령 및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며,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 사업주체, 건설위치, 시공업체 및 감리회사명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지구 및 블럭	건설위치	건설현황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감리회사 및 금액	난방 방식
			계	분양	임대			
서울주택도시공사 (218-82-00136)	위례 A1-5BL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51	1,282	1,282	-	㈜한화건설 (104-81-73406) 동아건설사업(주) (110-81-00214) 세일이엔에스(주) (220-81-19418)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o 감리금액 : 6,179,917,000원	지역 난방
	위례 A1-12BL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06	394	394	-	진흥기업(주) (106-81-32769) 태평로건설(주) (211-87-60399) ㈜삼영기업 (229-81-19166)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금정이엔씨 o 감리금액 : 4,110,620,000원	

2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공급세대수

공급대상

지구	블럭	주택유형	분양주택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발코니 유형	평면 유형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공급면적(A)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밖의 공용면적(B)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A+B)	세대별 대지면적 (㎡)	분양 건설 세대수	분양세대수 계	특별분양 소계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타 (기관추천 등)	일반분양	최고 층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계														1,676	1,676	1,386	167	83	502	418	216	290	-	104
위례	A1-5	규모	A1-5BL 소계											1,282	1,282	1,062	128	64	384	320	166	220	-	80
			2020001299-01	066.0000H	확장	66A	86.26	66.83	19.43	4.54	39.33	130.13	40.72	183	183	149	18	9	58	47	17	34	16	22
			2020001299-02	070.0000H	확장	70A	91.07	70.65	20.42	4.81	41.58	137.46	43.05	60	148	121	14	7	44	35	21	27	14	2
						70B	91.44	70.95	20.49	4.82	41.75	138.01	43.22	60										
						70C	91.13	70.71	20.42	4.80	41.61	137.54	43.08	13										
						70D	91.47	70.99	20.48	4.82	41.78	138.07	43.25	15										
			2020001299-03	075.0000H	확장	75A	97.89	75.91	21.98	5.17	44.67	147.73	46.25	167	223	182	24	12	70	58	18	41	16	39
						75B	98.53	75.60	22.93	5.14	44.49	148.16	46.06	56										
			2020001299-04	080.0000H	확장	80A	103.54	80.41	23.13	5.47	47.32	156.33	48.99	48	332	272	36	18	108	90	20	60	14	1
						80B	103.97	80.77	23.20	5.50	47.53	157.00	49.21	48										
						80C	103.48	80.36	23.12	5.47	47.29	156.24	48.96	66										
						80D	103.92	80.72	23.20	5.49	47.50	156.91	49.18	86										
						80E	104.74	80.57	24.17	5.47	47.41	157.62	49.09	41										
						80F	104.90	80.69	24.21	5.48	47.48	157.86	49.16	43										
			2020001299-05	084.0000H	확장	84A	109.05	84.80	24.25	5.77	49.90	164.72	51.67	297	396	338	36	18	104	90	90	58	25	16
						84B	109.75	84.60	25.15	5.75	49.78	165.28	51.55	99										

지구	블럭	주택유형	분양주택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발코니 유형	평면 유형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공급면적(A)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밖의 공용면적(B)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A+B)	세대별 대지면적 (㎡)	분양 건설 세대수	분양세대수 계	특별분양 소계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타 (기관추천 등)	일반분양	최고 층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A1-12BL 소계											394	394	324	39	19	118	98	50	70	-	24
	A1-12		2020001298-01	064.0000H	확장	64A	84.21	64.94	19.27	6.32	34.66	125.19	42.85	84	84	70	8	4	27	21	10	14	14	6
			2020001298-02	074.0000H	확장	74A	96.58	74.96	21.62	7.30	40.01	143.89	49.46	47	154	126	15	7	46	38	20	28	24	10
						74B	96.47	74.96	21.51	7.30	40.01	143.78	49.46	24										
						74C	96.52	74.90	21.62	7.29	39.98	143.79	49.42	30										
						74D	96.43	74.93	21.50	7.30	39.99	143.72	49.44	20										
						74E	96.61	74.90	21.71	7.29	39.98	143.88	49.42	33										
			2020001298-03	084.0000H	확장	84A	108.99	84.75	24.24	8.26	45.24	162.49	55.92	134	156	128	16	8	45	39	20	28	21	8
						84B	109.02	84.70	24.32	8.25	45.21	162.48	55.89	3										
						84C	109.80	84.92	24.88	8.27	45.33	163.40	56.04	19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위례지구 A1-5BL 066.0000H	070.0000H	075.0000H	080.0000H	084.0000H	소계	위례지구 A1-12BL 064.0000H	074.0000H	084.0000H	소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8	8	8	8	8	40	5	5	5	15
	장애인	1	2	2	2	1	8	1	3	3	7
	의사상자	1	2	2	2	1	8	1	3	3	7
	다문화가족	1	2	2	2	1	8	1	3	3	7
	북한이탈주민	1	2	2	2	1	8	1	3	3	7
	중소기업 근로자	1	2	2	2	1	8	1	3	3	7
철거민		4	3	-	2	77	86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8	14	24	36	36	128	8	15	16	3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7	12	18	18	64	4	7	8	19
신혼부부 특별공급		58	44	70	108	104	384	27	46	45	118
생애최초 특별공급		47	35	58	90	90	320	21	38	39	98
합계		149	121	182	272	338	1,062	70	126	128	324

- 기타공용면적은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증감이 없는 것으로 봄
- 위 공급대상의 **'평면유형'은 청약신청자의 팸플릿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최고층수는 공급대상 주택형의 최고층수를 표시한 것임(동 · 호수는 팸플릿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 평면유형 내에 설치되는 면적(발코니 면적 등 포함)은 세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수 조정 등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청약신청은 주택형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각 주택형별 평면유형은 청약자가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 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

■ 동 · 호수는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평면유형, 동, 층, 향, 신청순위에 관계없이**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동 · 호수 배정)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됨.**

3 분양주택가격 및 납부방법

세대별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금액이며, 주택가격은 **평면유형, 층, 향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가격**으로 세대별 주택가격이 다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본 주택가격에는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금액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 금회 공급하는 위례지구 A1-5BL 및 12BL 분양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침실 등의 발코니 확장여부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 세대에 당첨이 되시면 **주택가격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래 표에서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된 금액**임.
- 입주금(주택가격)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발코니확장비용 잔금 포함)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발코니확장비용 잔금포함)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한 열쇠불출이 불가**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입주금은 아래의 순서로 수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① 계약금 ② 발코니확장 계약금 ③ 중도금 ④ 잔금 ⑤ 발코니확장 잔금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음.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분양가액은 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용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A1-5BL이 17단지, A1-12BL이 15단지로 블럭 순서대로 기재]**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1	0101	066.0000H	66A	494,390	98,878	98,878	296,634	2,345,200
1701	0102	066.0000H	66A	494,390	98,878	98,878	296,634	2,345,200
1701	0201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01	0202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01	0203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01	0204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01	0205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01	0206	075.0000H	75B	566,262	113,252	113,252	339,758	2,337,500
1701	0301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1	0302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1	0303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1	0304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1	0305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1	0306	075.0000H	75B	575,471	115,094	115,094	345,283	2,337,500
1701	0401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1	0402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1	0403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1	0404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1	0405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1	0406	075.0000H	75B	584,681	116,936	116,936	350,809	2,337,500
1701	0501	070.0000H	70A	529,195	105,839	105,839	317,517	2,613,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1	0502	070.0000H	70A	529,195	105,839	105,839	317,517	2,613,600
1701	0503	070.0000H	70A	529,195	105,839	105,839	317,517	2,613,600
1701	0504	070.0000H	70A	529,195	105,839	105,839	317,517	2,613,600
1701	0505	070.0000H	70A	529,195	105,839	105,839	317,517	2,613,600
1701	0506	080.0000H	80E	604,498	120,899	120,899	362,700	2,192,300
1701	0601	070.0000H	70A	537,656	107,531	107,531	322,594	2,613,600
1701	0602	070.0000H	70A	537,656	107,531	107,531	322,594	2,613,600
1701	0603	070.0000H	70A	529,195	105,839	105,839	317,517	2,613,600
1701	0604	070.0000H	70A	529,195	105,839	105,839	317,517	2,613,600
1701	0605	070.0000H	70A	537,656	107,531	107,531	322,594	2,613,600
1701	0606	080.0000H	80E	604,498	120,899	120,899	362,700	2,192,300
1701	0701	070.0000H	70B	538,994	107,798	107,798	323,398	2,613,600
1701	0702	070.0000H	70B	538,994	107,798	107,798	323,398	2,613,600
1701	0703	070.0000H	70B	538,994	107,798	107,798	323,398	2,613,600
1701	0704	070.0000H	70B	538,994	107,798	107,798	323,398	2,613,600
1701	0705	070.0000H	70B	538,994	107,798	107,798	323,398	2,613,600
1701	0706	080.0000H	80F	605,049	121,009	121,009	363,031	2,302,300
1701	0801	070.0000H	70B	545,340	109,068	109,068	327,204	2,613,600
1701	0802	070.0000H	70B	545,340	109,068	109,068	327,204	2,613,600
1701	0803	070.0000H	70B	538,994	107,798	107,798	323,398	2,613,600
1701	0804	070.0000H	70B	538,994	107,798	107,798	323,398	2,613,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1	0805	070.0000H	70B	545,340	109,068	109,068	327,204	2,613,600
1701	0806	080.0000H	80F	614,721	122,944	122,944	368,833	2,302,300
1701	0901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1	0902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1	0903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1	0904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1	0905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1	0906	080.0000H	80E	614,170	122,834	122,834	368,502	2,192,300
1701	1001	070.0000H	70A	550,349	110,069	110,069	330,211	2,613,600
1701	1002	070.0000H	70A	550,349	110,069	110,069	330,211	2,613,600
1701	1003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1	1004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1	1005	070.0000H	70A	550,349	110,069	110,069	330,211	2,613,600
1701	1006	080.0000H	80E	621,424	124,284	124,284	372,856	2,192,300
1701	1101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1	1102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1	1103	070.0000H	70B	545,340	109,068	109,068	327,204	2,613,600
1701	1104	070.0000H	70B	545,340	109,068	109,068	327,204	2,613,600
1701	1105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1	1106	080.0000H	80F	621,975	124,395	124,395	373,185	2,302,300
1701	1201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1	1202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1	1203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1	1204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1	1205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1	1206	080.0000H	80F	621,975	124,395	124,395	373,185	2,302,300
1701	1301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1	1302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1	1303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1	1304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1	1305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1	1306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01	1401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1	1402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1	1403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1	1404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1	1405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1	1406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02	0201	075.0000H	75A	567,762	113,552	113,552	340,658	2,761,000
1702	0202	075.0000H	75A	567,762	113,552	113,552	340,658	2,761,000
1702	0203	075.0000H	75A	567,762	113,552	113,552	340,658	2,761,000
1702	0204	075.0000H	75A	567,762	113,552	113,552	340,658	2,761,000
1702	0301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2	0302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2	0303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2	0304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2	04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2	0404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2	0503	080.0000H	80A	603,710	120,742	120,742	362,226	3,075,600
1702	0504	080.0000H	80A	603,710	120,742	120,742	362,226	3,075,600
1702	0603	080.0000H	80A	603,710	120,742	120,742	362,226	3,075,600
1702	0604	080.0000H	80A	603,710	120,742	120,742	362,226	3,075,600
1702	0703	080.0000H	80B	615,115	123,023	123,023	369,069	3,075,600
1702	0704	080.0000H	80B	605,443	121,088	121,088	363,267	3,075,600
1702	0803	080.0000H	80B	615,115	123,023	123,023	369,069	3,075,600
1702	0804	080.0000H	80B	615,115	123,023	123,023	369,069	3,075,600
1702	0903	080.0000H	80A	620,636	124,127	124,127	372,382	3,075,600
1702	0904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2	1003	080.0000H	80A	620,636	124,127	124,127	372,382	3,075,600
1702	1004	080.0000H	80A	620,636	124,127	124,127	372,382	3,075,600
1702	1103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2	1104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2	1203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2	1204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2	1303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02	1304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02	1403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02	1404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03	0201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03	0202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03	0203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03	0301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3	0302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3	0303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3	0401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3	0402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3	0403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3	0501	070.0000H	70A	537,656	107,531	107,531	322,594	2,613,600
1703	0502	070.0000H	70A	537,656	107,531	107,531	322,594	2,613,600
1703	0503	070.0000H	70A	537,656	107,531	107,531	322,594	2,613,600
1703	0504	070.0000H	70A	537,656	107,531	107,531	322,594	2,613,600
1703	0505	070.0000H	70A	529,195	105,839	105,839	317,517	2,613,600
1703	0506	080.0000H	80E	604,498	120,899	120,899	362,700	2,192,300
1703	0601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3	0602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3	0603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3	0604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3	0605	070.0000H	70A	529,195	105,839	105,839	317,517	2,613,600
1703	0606	080.0000H	80E	604,498	120,899	120,899	362,700	2,192,300
1703	0701	070.0000H	70B	545,340	109,068	109,068	327,204	2,613,600
1703	0702	070.0000H	70B	545,340	109,068	109,068	327,204	2,613,600
1703	0703	070.0000H	70B	545,340	109,068	109,068	327,204	2,613,600
1703	0704	070.0000H	70B	545,340	109,068	109,068	327,204	2,613,600
1703	0705	070.0000H	70B	538,994	107,798	107,798	323,398	2,613,600
1703	0706	080.0000H	80F	605,049	121,009	121,009	363,031	2,302,300
1703	0801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3	0802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3	0803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3	0804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3	0805	070.0000H	70B	538,994	107,798	107,798	323,398	2,613,600
1703	0806	080.0000H	80F	614,721	122,944	122,944	368,833	2,302,300
1703	0901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3	0902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3	0903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3	0904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3	0905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3	0906	080.0000H	80E	614,170	122,834	122,834	368,502	2,192,300
1703	1001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3	1002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3	1003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3	1004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3	1005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3	1006	080.0000H	80E	621,424	124,284	124,284	372,856	2,192,300
1703	1101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3	1102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3	1103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3	1104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3	1105	070.0000H	70B	545,340	109,068	109,068	327,204	2,613,600
1703	1106	080.0000H	80F	621,975	124,395	124,395	373,185	2,302,300
1703	1201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3	1202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3	1203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3	1204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3	1205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3	1206	080.0000H	80F	621,975	124,395	124,395	373,185	2,302,300
1703	1301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3	1302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3	1303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3	1304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3	1305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3	1306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03	1401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3	1402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3	1403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3	1404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3	1405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03	1406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04	0101	075.0000H	75B	554,750	110,950	110,950	332,850	2,337,500
1704	0102	066.0000H	66A	494,390	98,878	98,878	296,634	2,345,200
1704	0103	066.0000H	66A	494,390	98,878	98,878	296,634	2,345,200
1704	0104	066.0000H	66A	494,390	98,878	98,878	296,634	2,345,200
1704	0105	066.0000H	66A	494,390	98,878	98,878	296,634	2,345,200
1704	0106	066.0000H	66A	494,390	98,878	98,878	296,634	2,345,200
1704	0201	075.0000H	75B	566,262	113,252	113,252	339,758	2,337,500
1704	0202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4	0203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4	0204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4	0205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4	0206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4	0301	075.0000H	75B	575,471	115,094	115,094	345,283	2,337,500
1704	0302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4	0303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4	0304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4	0305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4	0306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04	0401	075.0000H	75B	575,471	115,094	115,094	345,283	2,337,500
1704	0402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4	0403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4	0404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4	0405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4	0406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04	0501	080.0000H	80E	604,498	120,899	120,899	362,700	2,192,300
1704	0502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4	0503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4	0504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4	0505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4	0506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4	0601	080.0000H	80E	604,498	120,899	120,899	362,700	2,192,300
1704	0602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4	0603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4	0604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4	0605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4	0606	070.0000H	70A	544,002	108,800	108,800	326,402	2,613,600
1704	0701	080.0000H	80F	605,049	121,009	121,009	363,031	2,302,300
1704	0702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4	0703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4	0704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4	0705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4	0706	070.0000H	70B	551,687	110,337	110,337	331,013	2,613,600
1704	0801	080.0000H	80F	605,049	121,009	121,009	363,031	2,302,300
1704	0802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4	0803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4	0804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4	0805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4	0806	070.0000H	70B	558,033	111,606	111,606	334,821	2,613,600
1704	0901	080.0000H	80E	614,170	122,834	122,834	368,502	2,192,300
1704	0902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4	0903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4	0904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4	0905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4	0906	070.0000H	70A	556,695	111,339	111,339	334,017	2,613,600
1704	1001	080.0000H	80E	614,170	122,834	122,834	368,502	2,192,300
1704	1002	070.0000H	70A	563,041	112,608	112,608	337,825	2,613,600
1704	1003	070.0000H	70A	563,041	112,608	112,608	337,825	2,613,600
1704	1004	070.0000H	70A	563,041	112,608	112,608	337,825	2,613,600
1704	1005	070.0000H	70A	563,041	112,608	112,608	337,825	2,613,600
1704	1006	070.0000H	70A	563,041	112,608	112,608	337,825	2,613,600
1704	1101	080.0000H	80F	614,721	122,944	122,944	368,833	2,302,300
1704	1102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4	1103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4	1104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4	1105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4	1106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4	1201	080.0000H	80F	621,975	124,395	124,395	373,185	2,302,300
1704	1202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4	1203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4	1204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4	1205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4	1206	070.0000H	70B	564,379	112,875	112,875	338,629	2,613,600
1704	1301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04	1302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4	1303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4	1304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4	1305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4	1306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4	1401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04	1402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4	1403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4	1404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4	1405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4	1406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05	0101	084.0000H	84B	619,942	123,988	123,988	371,966	2,401,300
1705	0102	084.0000H	84A	620,886	124,177	124,177	372,532	3,837,900
1705	0103	084.0000H	84A	620,886	124,177	124,177	372,532	3,837,900
1705	0104	084.0000H	84A	620,886	124,177	124,177	372,532	3,837,900
1705	0201	084.0000H	84B	632,698	126,539	126,539	379,620	2,401,300
1705	0202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5	0203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5	0204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5	0301	084.0000H	84B	632,698	126,539	126,539	379,620	2,401,300
1705	03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303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5	0304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5	04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5	04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4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4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5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5	05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5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5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6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5	06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6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6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7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5	07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7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7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8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5	08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08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8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5	09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05	09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09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09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0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5	10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0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0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1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05	11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1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1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2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05	12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2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2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3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05	13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3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3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5	14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5	14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4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4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5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5	15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5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5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6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5	16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6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6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7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5	17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7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7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5	18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5	18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18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18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19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5	19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19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19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20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05	20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20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20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5	21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05	21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21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21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5	22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05	22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2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2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3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05	23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3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3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4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05	24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4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4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5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05	25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5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5	25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6	0101	075.0000H	75A	556,250	111,250	111,250	333,750	2,761,000
1706	0102	075.0000H	75A	556,250	111,250	111,250	333,750	2,761,000
1706	0103	075.0000H	75A	556,250	111,250	111,250	333,750	2,761,000
1706	0104	075.0000H	75A	556,250	111,250	111,250	333,750	2,761,000
1706	0201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6	0202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6	0203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6	0204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6	03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6	0302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6	0303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6	0304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6	04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6	0402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6	04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6	0404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6	0501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6	0502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6	0503	080.0000H	80A	603,710	120,742	120,742	362,226	3,075,600
1706	0504	080.0000H	80A	603,710	120,742	120,742	362,226	3,075,600
1706	0601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6	0602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6	0603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6	0604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6	0701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6	0702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6	0703	080.0000H	80B	615,115	123,023	123,023	369,069	3,075,600
1706	0704	080.0000H	80B	615,115	123,023	123,023	369,069	3,075,600
1706	0801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6	0802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6	0803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6	0804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6	0901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6	0902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6	0903	080.0000H	80A	620,636	124,127	124,127	372,382	3,075,600
1706	0904	080.0000H	80A	620,636	124,127	124,127	372,382	3,075,600
1706	1001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6	1002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6	1003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6	1004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6	1101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6	1102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6	1103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6	1104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6	1201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6	1202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6	1203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6	1204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6	13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6	1302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6	13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6	1304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6	14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6	1402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6	14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6	1404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7	0103	075.0000H	75A	556,250	111,250	111,250	333,750	2,761,000
1707	0104	075.0000H	75A	556,250	111,250	111,250	333,750	2,761,000
1707	02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7	0202	075.0000H	75B	584,681	116,936	116,936	350,809	2,337,500
1707	0203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7	0204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7	0301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07	0302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07	03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7	0304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7	0401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07	0402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07	04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7	0404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7	0501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7	0502	080.0000H	80E	628,677	125,735	125,735	377,207	2,192,300
1707	0503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7	0504	080.0000H	80A	603,710	120,742	120,742	362,226	3,075,600
1707	0601	080.0000H	80A	635,143	127,028	127,028	381,087	3,075,600
1707	0602	080.0000H	80E	628,677	125,735	125,735	377,207	2,192,300
1707	0603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7	0604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7	0701	080.0000H	80B	636,876	127,375	127,375	382,126	3,075,600
1707	0702	080.0000H	80F	629,228	125,845	125,845	377,538	2,302,300
1707	0703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7	0704	080.0000H	80B	615,115	123,023	123,023	369,069	3,075,600
1707	0801	080.0000H	80B	636,876	127,375	127,375	382,126	3,075,600
1707	0802	080.0000H	80F	636,482	127,296	127,296	381,890	2,302,300
1707	0803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7	0804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7	0901	080.0000H	80A	642,397	128,479	128,479	385,439	3,075,600
1707	0902	080.0000H	80E	635,931	127,186	127,186	381,559	2,192,300
1707	0903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7	0904	080.0000H	80A	620,636	124,127	124,127	372,382	3,075,600
1707	1001	080.0000H	80A	642,397	128,479	128,479	385,439	3,075,600
1707	1002	080.0000H	80E	635,931	127,186	127,186	381,559	2,192,300
1707	1003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7	1004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7	1101	080.0000H	80B	644,130	128,826	128,826	386,478	3,075,600
1707	1102	080.0000H	80F	636,482	127,296	127,296	381,890	2,302,300
1707	1103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7	1104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7	1201	080.0000H	80B	644,130	128,826	128,826	386,478	3,075,600
1707	1202	080.0000H	80F	643,736	128,747	128,747	386,242	2,302,300
1707	1203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7	1204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7	1301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07	1302	075.0000H	75B	610,007	122,001	122,001	366,005	2,337,500
1707	13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7	1304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7	1401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07	1402	075.0000H	75B	610,007	122,001	122,001	366,005	2,337,500
1707	14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7	1404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8	0102	075.0000H	75B	575,471	115,094	115,094	345,283	2,337,500
1708	0103	075.0000H	75A	567,762	113,552	113,552	340,658	2,761,000
1708	0104	075.0000H	75A	567,762	113,552	113,552	340,658	2,761,000
1708	02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8	0202	075.0000H	75B	584,681	116,936	116,936	350,809	2,337,500
1708	0203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8	0204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8	03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8	0302	075.0000H	75B	584,681	116,936	116,936	350,809	2,337,500
1708	0303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8	0304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08	0401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08	0402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08	04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8	0404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08	0501	080.0000H	80A	620,636	124,127	124,127	372,382	3,075,600
1708	0502	080.0000H	80E	614,170	122,834	122,834	368,502	2,192,300
1708	0503	080.0000H	80A	603,710	120,742	120,742	362,226	3,075,600
1708	0504	080.0000H	80A	603,710	120,742	120,742	362,226	3,075,600
1708	0601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8	0602	080.0000H	80E	621,424	124,284	124,284	372,856	2,192,300
1708	0603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8	0604	080.0000H	80A	613,382	122,676	122,676	368,030	3,075,600
1708	0701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8	0702	080.0000H	80F	621,975	124,395	124,395	373,185	2,302,300
1708	0703	080.0000H	80B	615,115	123,023	123,023	369,069	3,075,600
1708	0704	080.0000H	80B	615,115	123,023	123,023	369,069	3,075,600
1708	0801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8	0802	080.0000H	80F	629,228	125,845	125,845	377,538	2,302,300
1708	0803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8	0804	080.0000H	80B	622,369	124,473	124,473	373,423	3,075,600
1708	0901	080.0000H	80A	635,143	127,028	127,028	381,087	3,075,600
1708	0902	080.0000H	80E	628,677	125,735	125,735	377,207	2,192,300
1708	0903	080.0000H	80A	620,636	124,127	124,127	372,382	3,075,600
1708	0904	080.0000H	80A	620,636	124,127	124,127	372,382	3,075,600
1708	1001	080.0000H	80A	635,143	127,028	127,028	381,087	3,075,600
1708	1002	080.0000H	80E	628,677	125,735	125,735	377,207	2,192,300
1708	1003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8	1004	080.0000H	80A	627,889	125,577	125,577	376,735	3,075,600
1708	1101	080.0000H	80B	636,876	127,375	127,375	382,126	3,075,600
1708	1102	080.0000H	80F	629,228	125,845	125,845	377,538	2,302,300
1708	1103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8	1104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8	1201	080.0000H	80B	636,876	127,375	127,375	382,126	3,075,600
1708	1202	080.0000H	80F	636,482	127,296	127,296	381,890	2,302,300
1708	1203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8	1204	080.0000H	80B	629,622	125,924	125,924	377,774	3,075,600
1708	13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8	1302	075.0000H	75B	603,100	120,620	120,620	361,860	2,337,500
1708	13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8	1304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8	14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8	1402	075.0000H	75B	603,100	120,620	120,620	361,860	2,337,500
1708	14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8	1404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09	0101	084.0000H	84B	619,942	123,988	123,988	371,966	2,401,300
1709	0102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9	0103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9	0104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9	0201	084.0000H	84B	632,698	126,539	126,539	379,620	2,401,300
1709	0202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9	0203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9	0204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09	0301	084.0000H	84B	632,698	126,539	126,539	379,620	2,401,300
1709	03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3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3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4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9	04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4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4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5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9	05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5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5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6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9	06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6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6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7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9	07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7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09	07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9	08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9	08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9	08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9	08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9	09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09	09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9	09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9	09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9	10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09	10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9	10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9	10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1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09	11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9	11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09	11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2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09	12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2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2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3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09	13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3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3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4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09	14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4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4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5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09	15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5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5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6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9	16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6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6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17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9	17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7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09	17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18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9	18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18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18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19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09	19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19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19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20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9	20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20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20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1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09	21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21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09	21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2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09	22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2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2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3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09	23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3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3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4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09	24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4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4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5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09	25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5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09	25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0101	084.0000H	84B	619,942	123,988	123,988	371,966	2,401,300
1710	0102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0	0103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0	0104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0	0201	084.0000H	84B	632,698	126,539	126,539	379,620	2,401,300
1710	0202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0	0203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0	0204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0	0301	084.0000H	84B	632,698	126,539	126,539	379,620	2,401,300
1710	03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3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3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4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10	04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4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4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0	05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10	05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5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5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6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10	06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6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6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7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10	07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7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7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0	08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10	08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08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08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09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10	09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09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09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10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10	10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10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10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11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10	11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11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11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0	12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10	12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2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2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3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10	13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3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3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4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0	14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4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4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5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0	15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5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0	15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6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0	16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6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6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7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0	17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7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7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0	18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0	18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18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18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19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0	19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19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19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20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10	20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20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20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21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10	21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21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21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0	22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10	22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2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2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3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10	23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3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3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4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10	24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4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4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5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10	25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5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0	25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1	0101	084.0000H	84B	632,698	126,539	126,539	379,620	2,401,300
1711	0102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1	0103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1	0104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1	0201	084.0000H	84B	632,698	126,539	126,539	379,620	2,401,300
1711	0202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1	0203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1	0204	084.0000H	84A	633,642	126,728	126,728	380,186	3,837,900
1711	03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11	03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3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3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4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11	04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4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4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5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11	05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5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5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6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11	0602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6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6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701	084.0000H	84B	642,903	128,580	128,580	385,743	2,401,300
1711	07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0703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704	084.0000H	84A	643,847	128,769	128,769	386,309	3,837,900
1711	08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11	08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08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08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09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11	0902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09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09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10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11	10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0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10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1101	084.0000H	84B	653,107	130,621	130,621	391,865	2,401,300
1711	11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103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1104	084.0000H	84A	654,051	130,810	130,810	392,431	3,837,900
1711	12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1	12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2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2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3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1	13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3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3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4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1	14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4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4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5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1	1502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5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5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6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1	16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16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6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701	084.0000H	84B	660,761	132,152	132,152	396,457	2,401,300
1711	17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1703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704	084.0000H	84A	661,705	132,341	132,341	397,023	3,837,900
1711	18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11	18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18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18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19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11	1902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19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19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20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11	20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1	20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20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2101	084.0000H	84B	668,415	133,683	133,683	401,049	2,401,300
1711	21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1	2103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2104	084.0000H	84A	669,359	133,871	133,871	401,617	3,837,900
1711	2201	084.0000H	84B	676,068	135,213	135,213	405,642	2,401,300
1711	22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1	22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1	22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1	2301	084.0000H	84B	676,068	135,213	135,213	405,642	2,401,300
1711	23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1	23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1	23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1	2401	084.0000H	84B	676,068	135,213	135,213	405,642	2,401,300
1711	2402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1	2403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1	2404	084.0000H	84A	677,012	135,402	135,402	406,208	3,837,900
1712	0201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12	0202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12	0203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12	0204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12	0301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302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303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304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401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402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403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404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501	070.0000H	70C	537,892	107,578	107,578	322,736	1,823,800
1712	0502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503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504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601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2	0602	070.0000H	70D	539,230	107,846	107,846	323,538	1,862,300
1712	0603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604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2	0701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2	0702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2	0703	070.0000H	70C	537,892	107,578	107,578	322,736	1,823,800
1712	0704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2	0801	070.0000H	70C	544,238	108,847	108,847	326,544	1,823,800
1712	0802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2	0803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2	0804	070.0000H	70D	545,576	109,115	109,115	327,346	1,862,300
1712	0901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0902	070.0000H	70D	551,923	110,384	110,384	331,155	1,862,300
1712	0903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2	0904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2	1001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002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003	070.0000H	70C	550,585	110,117	110,117	330,351	1,823,8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2	1004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101	070.0000H	70C	556,931	111,386	111,386	334,159	1,823,800
1712	1102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103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104	070.0000H	70D	551,923	110,384	110,384	331,155	1,862,300
1712	1201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202	070.0000H	70D	558,269	111,653	111,653	334,963	1,862,300
1712	1203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204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301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2	1302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2	1303	070.0000H	70C	556,931	111,386	111,386	334,159	1,823,800
1712	1304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401	070.0000H	70C	563,277	112,655	112,655	337,967	1,823,800
1712	1402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2	1403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404	070.0000H	70D	558,269	111,653	111,653	334,963	1,862,300
1712	1501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2	1502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2	1503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504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2	1601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2	1602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2	1603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2	1604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0101	075.0000H	75B	554,750	110,950	110,950	332,850	2,337,500
1713	0102	066.0000H	66A	494,390	98,878	98,878	296,634	2,345,200
1713	0103	066.0000H	66A	494,390	98,878	98,878	296,634	2,345,200
1713	0104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13	0105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13	0106	066.0000H	66A	502,459	100,491	100,491	301,477	2,345,200
1713	0201	075.0000H	75B	575,471	115,094	115,094	345,283	2,337,500
1713	0202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13	0203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13	0204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13	0205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206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301	075.0000H	75B	575,471	115,094	115,094	345,283	2,337,500
1713	0302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13	0303	066.0000H	66A	510,528	102,105	102,105	306,318	2,345,200
1713	0304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305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306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3	0401	075.0000H	75B	584,681	116,936	116,936	350,809	2,337,500
1713	0402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403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404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405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0406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0501	080.0000H	80E	604,498	120,899	120,899	362,700	2,192,300
1713	0502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503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504	070.0000H	70D	539,230	107,846	107,846	323,538	1,862,300
1713	0505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0506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0601	075.0000H	75B	584,681	116,936	116,936	350,809	2,337,500
1713	0602	070.0000H	70D	530,769	106,153	106,153	318,463	1,862,300
1713	0603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604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0605	070.0000H	70C	544,238	108,847	108,847	326,544	1,823,800
1713	0606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0701	080.0000H	80F	614,721	122,944	122,944	368,833	2,302,300
1713	0702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703	070.0000H	70C	537,892	107,578	107,578	322,736	1,823,800
1713	0704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0705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0706	070.0000H	70D	551,923	110,384	110,384	331,155	1,862,300
1713	0801	080.0000H	80E	614,170	122,834	122,834	368,502	2,192,300
1713	0802	066.0000H	66A	516,579	103,315	103,315	309,949	2,345,200
1713	0803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0804	070.0000H	70D	545,576	109,115	109,115	327,346	1,862,300
1713	0805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0806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0901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13	0902	070.0000H	70D	539,230	107,846	107,846	323,538	1,862,300
1713	0903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0904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0905	070.0000H	70C	556,931	111,386	111,386	334,159	1,823,800
1713	0906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1001	080.0000H	80F	621,975	124,395	124,395	373,185	2,302,300
1713	1002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1003	070.0000H	70C	544,238	108,847	108,847	326,544	1,823,800
1713	1004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1005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006	070.0000H	70D	564,615	112,923	112,923	338,769	1,862,300
1713	1101	080.0000H	80E	621,424	124,284	124,284	372,856	2,192,3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3	1102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1103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1104	070.0000H	70D	558,269	111,653	111,653	334,963	1,862,300
1713	1105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106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201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13	1202	070.0000H	70D	545,576	109,115	109,115	327,346	1,862,300
1713	1203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1204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1205	070.0000H	70C	563,277	112,655	112,655	337,967	1,823,800
1713	1206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301	080.0000H	80F	629,228	125,845	125,845	377,538	2,302,300
1713	1302	066.0000H	66A	522,631	104,526	104,526	313,579	2,345,200
1713	1303	070.0000H	70C	550,585	110,117	110,117	330,351	1,823,800
1713	1304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305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306	070.0000H	70D	564,615	112,923	112,923	338,769	1,862,300
1713	1401	075.0000H	75B	603,100	120,620	120,620	361,860	2,337,500
1713	1402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1403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1404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405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406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501	075.0000H	75B	603,100	120,620	120,620	361,860	2,337,500
1713	1502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1503	066.0000H	66A	528,682	105,736	105,736	317,210	2,345,200
1713	1504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505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3	1506	066.0000H	66A	534,734	106,946	106,946	320,842	2,345,200
1714	0102	075.0000H	75B	575,471	115,094	115,094	345,283	2,337,500
1714	0103	075.0000H	75A	567,762	113,552	113,552	340,658	2,761,000
1714	02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4	0202	075.0000H	75B	584,681	116,936	116,936	350,809	2,337,500
1714	0203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4	03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4	0302	075.0000H	75B	584,681	116,936	116,936	350,809	2,337,500
1714	03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4	0401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4	0402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14	04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4	0501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4	0502	080.0000H	80E	621,424	124,284	124,284	372,856	2,192,300
1714	0503	080.0000H	80D	605,207	121,041	121,041	363,125	2,763,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4	0601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4	0602	080.0000H	80E	621,424	124,284	124,284	372,856	2,192,300
1714	0603	080.0000H	80D	614,879	122,975	122,975	368,929	2,763,200
1714	0701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4	0702	080.0000H	80F	629,228	125,845	125,845	377,538	2,302,300
1714	0703	080.0000H	80C	613,145	122,629	122,629	367,887	2,729,100
1714	0801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4	0802	080.0000H	80F	629,228	125,845	125,845	377,538	2,302,300
1714	0803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4	0901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4	0902	080.0000H	80E	628,677	125,735	125,735	377,207	2,192,300
1714	0903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4	1001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4	1002	080.0000H	80E	635,931	127,186	127,186	381,559	2,192,300
1714	1003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4	1101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4	1102	080.0000H	80F	636,482	127,296	127,296	381,890	2,302,300
1714	1103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4	1201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4	1202	080.0000H	80F	636,482	127,296	127,296	381,890	2,302,300
1714	1203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4	1301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4	1302	080.0000H	80E	635,931	127,186	127,186	381,559	2,192,300
1714	1303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4	1401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4	1402	080.0000H	80E	635,931	127,186	127,186	381,559	2,192,300
1714	1403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4	15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4	1502	075.0000H	75B	603,100	120,620	120,620	361,860	2,337,500
1714	15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4	1601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4	1602	075.0000H	75B	610,007	122,001	122,001	366,005	2,337,500
1714	16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5	0101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5	0102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5	01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5	0104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5	02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5	0202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5	02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5	0204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5	03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5	0302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5	0303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5	0304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5	0401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5	0402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5	0403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5	0404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5	0501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5	0502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5	0503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5	0504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5	0601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5	0602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5	0603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5	0604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5	0701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5	0702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5	0703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5	0704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5	0801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5	0802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5	0803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5	0804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5	0901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5	0902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5	0903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5	0904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5	1001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5	1002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5	1003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5	1004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5	1101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5	1102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5	1103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5	1104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5	1201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5	1202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5	1203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5	1204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5	1301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5	1302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5	1303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5	1304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5	1401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5	1402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5	1403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5	1404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5	15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5	1502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5	1503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5	1504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5	1601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5	1602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5	1603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5	1604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6	01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6	0102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6	01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6	0104	075.0000H	75B	575,471	115,094	115,094	345,283	2,337,500
1716	0201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6	0202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6	0203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6	0204	075.0000H	75B	584,681	116,936	116,936	350,809	2,337,500
1716	0301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6	0302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6	0303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6	0304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16	0401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6	0402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6	0403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6	0404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16	0501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6	0502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6	0503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6	0504	080.0000H	80F	621,975	124,395	124,395	373,185	2,302,300
1716	0601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6	0602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6	0603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6	0604	080.0000H	80F	629,228	125,845	125,845	377,538	2,302,300
1716	0701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6	0702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6	0703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6	0704	080.0000H	80E	628,677	125,735	125,735	377,207	2,192,300
1716	0801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6	0802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6	0803	080.0000H	80C	634,906	126,981	126,981	380,944	2,729,100
1716	0804	080.0000H	80E	628,677	125,735	125,735	377,207	2,192,3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6	0901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6	0902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6	0903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6	0904	080.0000H	80F	636,482	127,296	127,296	381,890	2,302,300
1716	1001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6	1002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6	1003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6	1004	080.0000H	80F	636,482	127,296	127,296	381,890	2,302,300
1716	1101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6	1102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6	1103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6	1104	080.0000H	80E	635,931	127,186	127,186	381,559	2,192,300
1716	1201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6	1202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6	1203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6	1204	080.0000H	80E	635,931	127,186	127,186	381,559	2,192,300
1716	1301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6	1302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6	1303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6	1304	080.0000H	80F	636,482	127,296	127,296	381,890	2,302,300
1716	1401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6	1402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6	1403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6	1404	080.0000H	80F	643,736	128,747	128,747	386,242	2,302,300
1716	1501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6	1502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6	1503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6	1504	075.0000H	75B	610,007	122,001	122,001	366,005	2,337,500
1716	1601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6	1602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6	1603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6	1604	075.0000H	75B	610,007	122,001	122,001	366,005	2,337,500
1717	0101	075.0000H	75A	556,250	111,250	111,250	333,750	2,761,000
1717	0102	075.0000H	75A	556,250	111,250	111,250	333,750	2,761,000
1717	0103	075.0000H	75A	556,250	111,250	111,250	333,750	2,761,000
1717	0201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7	0202	075.0000H	75A	567,762	113,552	113,552	340,658	2,761,000
1717	0203	075.0000H	75A	567,762	113,552	113,552	340,658	2,761,000
1717	0204	075.0000H	75B	566,262	113,252	113,252	339,758	2,337,500
1717	0301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7	0302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7	0303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7	0304	075.0000H	75B	575,471	115,094	115,094	345,283	2,337,5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7	0401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7	0402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7	04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7	0404	075.0000H	75B	584,681	116,936	116,936	350,809	2,337,500
1717	0501	080.0000H	80D	605,207	121,041	121,041	363,125	2,763,200
1717	0502	080.0000H	80D	605,207	121,041	121,041	363,125	2,763,200
1717	0503	080.0000H	80D	605,207	121,041	121,041	363,125	2,763,200
1717	0504	080.0000H	80F	605,049	121,009	121,009	363,031	2,302,300
1717	0601	080.0000H	80D	605,207	121,041	121,041	363,125	2,763,200
1717	0602	080.0000H	80D	605,207	121,041	121,041	363,125	2,763,200
1717	0603	080.0000H	80D	605,207	121,041	121,041	363,125	2,763,200
1717	0604	080.0000H	80F	605,049	121,009	121,009	363,031	2,302,300
1717	0701	080.0000H	80C	613,145	122,629	122,629	367,887	2,729,100
1717	0702	080.0000H	80C	603,473	120,694	120,694	362,085	2,729,100
1717	0703	080.0000H	80C	603,473	120,694	120,694	362,085	2,729,100
1717	0704	080.0000H	80E	614,170	122,834	122,834	368,502	2,192,300
1717	0801	080.0000H	80C	613,145	122,629	122,629	367,887	2,729,100
1717	0802	080.0000H	80C	613,145	122,629	122,629	367,887	2,729,100
1717	0803	080.0000H	80C	613,145	122,629	122,629	367,887	2,729,100
1717	0804	080.0000H	80E	614,170	122,834	122,834	368,502	2,192,300
1717	0901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7	0902	080.0000H	80D	614,879	122,975	122,975	368,929	2,763,200
1717	0903	080.0000H	80D	614,879	122,975	122,975	368,929	2,763,200
1717	0904	080.0000H	80F	621,975	124,395	124,395	373,185	2,302,300
1717	1001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7	1002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7	1003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7	1004	080.0000H	80F	621,975	124,395	124,395	373,185	2,302,300
1717	1101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7	1102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7	1103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7	1104	080.0000H	80E	621,424	124,284	124,284	372,856	2,192,300
1717	1201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7	1202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7	1203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7	1204	080.0000H	80E	628,677	125,735	125,735	377,207	2,192,300
1717	1301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7	1302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7	1303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7	1304	080.0000H	80F	629,228	125,845	125,845	377,538	2,302,300
1717	1401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7	1402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7	1403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7	1404	080.0000H	80F	629,228	125,845	125,845	377,538	2,302,300
1717	15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7	1502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7	15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7	1504	075.0000H	75B	603,100	120,620	120,620	361,860	2,337,500
1717	16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7	1602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7	16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7	1604	075.0000H	75B	603,100	120,620	120,620	361,860	2,337,500
1718	0201	075.0000H	75A	595,390	119,078	119,078	357,234	2,761,000
1718	0202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18	0203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8	0204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8	0205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8	03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8	0302	075.0000H	75B	593,890	118,778	118,778	356,334	2,337,500
1718	0303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8	0304	075.0000H	75A	576,971	115,394	115,394	346,183	2,761,000
1718	0305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8	04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8	0402	075.0000H	75B	603,100	120,620	120,620	361,860	2,337,500
1718	04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8	0404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8	0405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8	0501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8	0502	075.0000H	75B	603,100	120,620	120,620	361,860	2,337,500
1718	0503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8	0504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8	0505	075.0000H	75A	586,181	117,236	117,236	351,709	2,761,000
1718	0601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8	0602	080.0000H	80F	636,482	127,296	127,296	381,890	2,302,300
1718	0603	080.0000H	80C	603,473	120,694	120,694	362,085	2,729,100
1718	0604	080.0000H	80C	603,473	120,694	120,694	362,085	2,729,100
1718	0605	080.0000H	80C	613,145	122,629	122,629	367,887	2,729,100
1718	0701	080.0000H	80D	636,640	127,328	127,328	381,984	2,763,200
1718	0702	080.0000H	80F	636,482	127,296	127,296	381,890	2,302,300
1718	0703	080.0000H	80C	613,145	122,629	122,629	367,887	2,729,100
1718	0704	080.0000H	80C	613,145	122,629	122,629	367,887	2,729,100
1718	0705	080.0000H	80C	613,145	122,629	122,629	367,887	2,729,100
1718	0801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8	0802	080.0000H	80E	635,931	127,186	127,186	381,559	2,192,300
1718	0803	080.0000H	80D	614,879	122,975	122,975	368,929	2,763,200
1718	0804	080.0000H	80D	614,879	122,975	122,975	368,929	2,763,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718	0805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8	0901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8	0902	080.0000H	80E	643,185	128,637	128,637	385,911	2,192,300
1718	0903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8	0904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8	0905	080.0000H	80D	622,133	124,426	124,426	373,281	2,763,200
1718	1001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8	1002	080.0000H	80F	643,736	128,747	128,747	386,242	2,302,300
1718	1003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8	1004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8	1005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8	1101	080.0000H	80D	643,894	128,778	128,778	386,338	2,763,200
1718	1102	080.0000H	80F	643,736	128,747	128,747	386,242	2,302,300
1718	1103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8	1104	080.0000H	80C	620,399	124,079	124,079	372,241	2,729,100
1718	1105	080.0000H	80C	627,652	125,530	125,530	376,592	2,729,100
1718	1201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8	1202	080.0000H	80E	643,185	128,637	128,637	385,911	2,192,300
1718	1203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8	1204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8	1205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8	1301	080.0000H	80C	642,160	128,432	128,432	385,296	2,729,100
1718	1302	080.0000H	80E	643,185	128,637	128,637	385,911	2,192,300
1718	1303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8	1304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8	1305	080.0000H	80D	629,386	125,877	125,877	377,632	2,763,200
1718	1401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8	1402	075.0000H	75B	610,007	122,001	122,001	366,005	2,337,500
1718	14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8	1404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8	1405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8	1501	075.0000H	75A	611,507	122,301	122,301	366,905	2,761,000
1718	1502	075.0000H	75B	610,007	122,001	122,001	366,005	2,337,500
1718	1503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8	1504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718	1505	075.0000H	75A	604,600	120,920	120,920	362,760	2,761,000
1501	0201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1	0202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1	0203	084.0000H	84A	629,750	125,950	125,950	377,850	3,122,900
1501	0204	084.0000H	84A	629,750	125,950	125,950	377,850	3,122,900
1501	0301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1	0302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1	0303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501	0304	084.0000H	84A	629,750	125,950	125,950	377,850	3,122,900
1501	0401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402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403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1	0404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1	0501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502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503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1	0504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1	0601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602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603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604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1	0701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0702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0703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704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801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0802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0803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804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0901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0902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0903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0904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1	1001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002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003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004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101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102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103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104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201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202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203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204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301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302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303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304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401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402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501	1403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404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1	1501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1502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1503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504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601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1602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1603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604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1	1701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1702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1703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1704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1801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1802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1803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1804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1901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1902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1903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1904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2001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2002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2003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2004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1	2101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2102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2103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1	2104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2	0101	074.0000H	74E	546,616	109,323	109,323	327,970	2,935,900
1502	0102	074.0000H	74A	546,909	109,381	109,381	328,147	1,617,000
1502	0103	074.0000H	74B	546,909	109,381	109,381	328,147	1,593,900
1502	0201	074.0000H	74E	557,688	111,537	111,537	334,614	2,935,900
1502	0202	074.0000H	74A	566,839	113,367	113,367	340,105	1,617,000
1502	0203	074.0000H	74B	566,839	113,367	113,367	340,105	1,593,900
1502	0204	074.0000H	74A	557,981	111,596	111,596	334,789	1,617,000
1502	0301	074.0000H	74E	566,546	113,309	113,309	339,928	2,935,900
1502	0302	074.0000H	74A	566,839	113,367	113,367	340,105	1,617,000
1502	0303	074.0000H	74B	566,839	113,367	113,367	340,105	1,593,900
1502	0304	074.0000H	74A	566,839	113,367	113,367	340,105	1,617,000
1502	0401	074.0000H	74E	566,546	113,309	113,309	339,928	2,935,900
1502	0402	074.0000H	74A	575,698	115,139	115,139	345,420	1,617,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502	0403	074.0000H	74B	575,698	115,139	115,139	345,420	1,593,900
1502	0404	074.0000H	74A	566,839	113,367	113,367	340,105	1,617,000
1502	0501	074.0000H	74E	575,405	115,081	115,081	345,243	2,935,900
1502	0502	074.0000H	74A	575,698	115,139	115,139	345,420	1,617,000
1502	0503	074.0000H	74B	575,698	115,139	115,139	345,420	1,593,900
1502	0504	074.0000H	74A	575,698	115,139	115,139	345,420	1,617,000
1502	0601	074.0000H	74E	575,405	115,081	115,081	345,243	2,935,900
1502	0602	074.0000H	74A	575,698	115,139	115,139	345,420	1,617,000
1502	0603	074.0000H	74B	575,698	115,139	115,139	345,420	1,593,900
1502	0604	074.0000H	74A	575,698	115,139	115,139	345,420	1,617,000
1502	0701	074.0000H	74E	575,405	115,081	115,081	345,243	2,935,900
1502	0702	074.0000H	74A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617,000
1502	0703	074.0000H	74B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593,900
1502	0704	074.0000H	74A	575,698	115,139	115,139	345,420	1,617,000
1502	0801	074.0000H	74E	575,405	115,081	115,081	345,243	2,935,900
1502	0802	074.0000H	74A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617,000
1502	0803	074.0000H	74B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593,900
1502	0804	074.0000H	74A	575,698	115,139	115,139	345,420	1,617,000
1502	0901	074.0000H	74E	584,263	116,852	116,852	350,559	2,935,900
1502	0902	074.0000H	74A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617,000
1502	0903	074.0000H	74B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593,900
1502	0904	074.0000H	74A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617,000
1502	1001	074.0000H	74E	584,263	116,852	116,852	350,559	2,935,900
1502	1002	074.0000H	74A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617,000
1502	1003	074.0000H	74B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593,900
1502	1004	074.0000H	74A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617,000
1502	1101	074.0000H	74E	584,263	116,852	116,852	350,559	2,935,900
1502	1102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103	074.0000H	74B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593,900
1502	1104	074.0000H	74A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617,000
1502	1201	074.0000H	74E	584,263	116,852	116,852	350,559	2,935,900
1502	1202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203	074.0000H	74B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593,900
1502	1204	074.0000H	74A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617,000
1502	1301	074.0000H	74E	584,263	116,852	116,852	350,559	2,935,900
1502	1302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303	074.0000H	74B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593,900
1502	1304	074.0000H	74A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617,000
1502	1401	074.0000H	74E	584,263	116,852	116,852	350,559	2,935,900
1502	1402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403	074.0000H	74B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593,900
1502	1404	074.0000H	74A	584,556	116,911	116,911	350,734	1,617,000
1502	1501	074.0000H	74E	590,906	118,181	118,181	354,544	2,935,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502	1502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503	074.0000H	74B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593,900
1502	1504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601	074.0000H	74E	590,906	118,181	118,181	354,544	2,935,900
1502	1602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603	074.0000H	74B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593,900
1502	1604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701	074.0000H	74E	590,906	118,181	118,181	354,544	2,935,900
1502	1702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703	074.0000H	74B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593,900
1502	1704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801	074.0000H	74E	590,906	118,181	118,181	354,544	2,935,900
1502	1802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803	074.0000H	74B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593,900
1502	1804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901	074.0000H	74E	590,906	118,181	118,181	354,544	2,935,900
1502	1902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1903	074.0000H	74B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593,900
1502	1904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2001	074.0000H	74E	590,906	118,181	118,181	354,544	2,935,900
1502	2002	074.0000H	74A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617,000
1502	2003	074.0000H	74B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593,900
1502	2004	074.0000H	74A	591,199	118,239	118,239	354,721	1,617,000
1502	2101	074.0000H	74E	590,906	118,181	118,181	354,544	2,935,900
1502	2102	074.0000H	74A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617,000
1502	2103	074.0000H	74B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593,900
1502	2104	074.0000H	74A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617,000
1502	2201	074.0000H	74E	597,550	119,510	119,510	358,530	2,935,900
1502	2202	074.0000H	74A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617,000
1502	2203	074.0000H	74B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593,900
1502	2204	074.0000H	74A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617,000
1502	2301	074.0000H	74E	597,550	119,510	119,510	358,530	2,935,900
1502	2302	074.0000H	74A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617,000
1502	2303	074.0000H	74B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593,900
1502	2304	074.0000H	74A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617,000
1502	2401	074.0000H	74E	597,550	119,510	119,510	358,530	2,935,900
1502	2402	074.0000H	74A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617,000
1502	2403	074.0000H	74B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593,900
1502	2404	074.0000H	74A	597,843	119,568	119,568	358,707	1,617,000
1503	0101	084.0000H	84C	620,529	124,105	124,105	372,319	4,192,100
1503	0102	084.0000H	84B	629,530	125,906	125,906	377,718	1,133,000
1503	0103	084.0000H	84B	629,530	125,906	125,906	377,718	1,133,000
1503	0104	084.0000H	84B	629,530	125,906	125,906	377,718	1,133,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503	0201	084.0000H	84C	630,630	126,126	126,126	378,378	4,192,100
1503	0202	084.0000H	84A	629,750	125,950	125,950	377,850	3,122,900
1503	0203	084.0000H	84A	629,750	125,950	125,950	377,850	3,122,900
1503	0204	084.0000H	84A	629,750	125,950	125,950	377,850	3,122,900
1503	0301	084.0000H	84C	630,630	126,126	126,126	378,378	4,192,100
1503	0302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3	0303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3	0304	084.0000H	84A	629,750	125,950	125,950	377,850	3,122,900
1503	0401	084.0000H	84C	640,732	128,146	128,146	384,440	4,192,100
1503	0402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3	0403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3	0404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3	0501	084.0000H	84C	640,732	128,146	128,146	384,440	4,192,100
1503	0502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3	0503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3	0504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3	0601	084.0000H	84C	640,732	128,146	128,146	384,440	4,192,100
1503	0602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3	0603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3	0604	084.0000H	84A	639,852	127,970	127,970	383,912	3,122,900
1503	0701	084.0000H	84C	640,732	128,146	128,146	384,440	4,192,100
1503	0702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3	0703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3	0704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3	0801	084.0000H	84C	648,308	129,661	129,661	388,986	4,192,100
1503	0802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3	0803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3	0804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3	0901	084.0000H	84C	648,308	129,661	129,661	388,986	4,192,100
1503	0902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3	0903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3	0904	084.0000H	84A	647,428	129,485	129,485	388,458	3,122,900
1503	1001	084.0000H	84C	648,308	129,661	129,661	388,986	4,192,100
1503	1002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3	1003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3	1004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3	1101	084.0000H	84C	655,883	131,176	131,176	393,531	4,192,100
1503	1102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3	1103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3	1104	084.0000H	84A	655,003	131,000	131,000	393,003	3,122,900
1503	1201	084.0000H	84C	655,883	131,176	131,176	393,531	4,192,100
1503	1202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3	1203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503	1204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3	1301	084.0000H	84C	655,883	131,176	131,176	393,531	4,192,100
1503	1302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303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304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3	1401	084.0000H	84C	655,883	131,176	131,176	393,531	4,192,100
1503	1402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403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404	084.0000H	84A	662,579	132,515	132,515	397,549	3,122,900
1503	1501	084.0000H	84C	663,459	132,691	132,691	398,077	4,192,100
1503	1502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503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504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601	084.0000H	84C	663,459	132,691	132,691	398,077	4,192,100
1503	1602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603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604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701	084.0000H	84C	663,459	132,691	132,691	398,077	4,192,100
1503	1702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3	1703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3	1704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801	084.0000H	84C	663,459	132,691	132,691	398,077	4,192,100
1503	1802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3	1803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3	1804	084.0000H	84A	667,630	133,526	133,526	400,578	3,122,900
1503	1901	084.0000H	84C	663,459	132,691	132,691	398,077	4,192,100
1503	1902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3	1903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3	1904	084.0000H	84A	672,681	134,536	134,536	403,609	3,122,900
1504	0102	074.0000H	74C	546,616	109,323	109,323	327,970	1,457,500
1504	0103	074.0000H	74D	546,762	109,352	109,352	328,058	1,267,200
1504	0104	074.0000H	74C	546,616	109,323	109,323	327,970	1,457,500
1504	0105	074.0000H	74D	546,762	109,352	109,352	328,058	1,267,200
1504	0106	074.0000H	74C	546,616	109,323	109,323	327,970	1,457,500
1504	0201	074.0000H	74E	557,688	111,537	111,537	334,614	2,935,900
1504	0202	074.0000H	74C	566,546	113,309	113,309	339,928	1,457,500
1504	0203	074.0000H	74D	566,692	113,338	113,338	340,016	1,267,200
1504	0204	074.0000H	74C	557,688	111,537	111,537	334,614	1,457,500
1504	0205	074.0000H	74D	557,834	111,566	111,566	334,702	1,267,200
1504	0206	074.0000H	74C	557,688	111,537	111,537	334,614	1,457,500
1504	0301	074.0000H	74E	566,546	113,309	113,309	339,928	2,935,900
1504	0302	074.0000H	74C	566,546	113,309	113,309	339,928	1,457,500
1504	0303	074.0000H	74D	566,692	113,338	113,338	340,016	1,267,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504	0304	074.0000H	74C	566,546	113,309	113,309	339,928	1,457,500
1504	0305	074.0000H	74D	566,692	113,338	113,338	340,016	1,267,200
1504	0306	074.0000H	74C	557,688	111,537	111,537	334,614	1,457,500
1504	0401	074.0000H	74E	566,546	113,309	113,309	339,928	2,935,900
1504	0402	074.0000H	74C	575,405	115,081	115,081	345,243	1,457,500
1504	0403	074.0000H	74D	575,551	115,110	115,110	345,331	1,267,200
1504	0404	074.0000H	74C	566,546	113,309	113,309	339,928	1,457,500
1504	0405	074.0000H	74D	566,692	113,338	113,338	340,016	1,267,200
1504	0406	074.0000H	74C	566,546	113,309	113,309	339,928	1,457,500
1504	0501	074.0000H	74E	566,546	113,309	113,309	339,928	2,935,900
1504	0502	074.0000H	74C	575,405	115,081	115,081	345,243	1,457,500
1504	0503	074.0000H	74D	575,551	115,110	115,110	345,331	1,267,200
1504	0504	074.0000H	74C	566,546	113,309	113,309	339,928	1,457,500
1504	0505	074.0000H	74D	566,692	113,338	113,338	340,016	1,267,200
1504	0506	074.0000H	74C	566,546	113,309	113,309	339,928	1,457,500
1504	0601	074.0000H	74E	566,546	113,309	113,309	339,928	2,935,900
1504	0602	074.0000H	74C	575,405	115,081	115,081	345,243	1,457,500
1504	0603	074.0000H	74D	575,551	115,110	115,110	345,331	1,267,200
1504	0604	074.0000H	74C	566,546	113,309	113,309	339,928	1,457,500
1504	0605	074.0000H	74D	575,551	115,110	115,110	345,331	1,267,200
1504	0606	074.0000H	74C	566,546	113,309	113,309	339,928	1,457,500
1504	0701	074.0000H	74E	575,405	115,081	115,081	345,243	2,935,900
1504	0702	074.0000H	74C	584,263	116,852	116,852	350,559	1,457,500
1504	0703	074.0000H	74D	584,409	116,881	116,881	350,647	1,267,200
1504	0704	074.0000H	74C	575,405	115,081	115,081	345,243	1,457,500
1504	0705	074.0000H	74D	575,551	115,110	115,110	345,331	1,267,200
1504	0706	074.0000H	74C	566,546	113,309	113,309	339,928	1,457,500
1504	0801	074.0000H	74E	575,405	115,081	115,081	345,243	2,935,900
1504	0802	074.0000H	74C	584,263	116,852	116,852	350,559	1,457,500
1504	0803	074.0000H	74D	584,409	116,881	116,881	350,647	1,267,200
1504	0804	074.0000H	74C	575,405	115,081	115,081	345,243	1,457,500
1504	0805	074.0000H	74D	575,551	115,110	115,110	345,331	1,267,200
1504	0806	074.0000H	74C	575,405	115,081	115,081	345,243	1,457,500
1504	0901	074.0000H	74E	575,405	115,081	115,081	345,243	2,935,900
1504	0902	074.0000H	74C	584,263	116,852	116,852	350,559	1,457,500
1504	0903	074.0000H	74D	584,409	116,881	116,881	350,647	1,267,200
1504	0904	074.0000H	74C	575,405	115,081	115,081	345,243	1,457,500
1504	0905	074.0000H	74D	575,551	115,110	115,110	345,331	1,267,200
1504	0906	074.0000H	74C	575,405	115,081	115,081	345,243	1,457,500
1504	1001	074.0000H	74E	575,405	115,081	115,081	345,243	2,935,900
1504	1002	074.0000H	74C	584,263	116,852	116,852	350,559	1,457,500
1504	1003	074.0000H	74D	584,409	116,881	116,881	350,647	1,267,200
1504	1004	074.0000H	74C	575,405	115,081	115,081	345,243	1,457,5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504	1005	074.0000H	74D	584,409	116,881	116,881	350,647	1,267,200
1504	1006	074.0000H	74C	575,405	115,081	115,081	345,243	1,457,500
1505	0101	064.0000H	64A	478,371	95,674	95,674	287,023	2,173,600
1505	0102	064.0000H	64A	478,371	95,674	95,674	287,023	2,173,600
1505	0103	064.0000H	64A	478,371	95,674	95,674	287,023	2,173,600
1505	0104	064.0000H	64A	478,371	95,674	95,674	287,023	2,173,600
1505	0105	064.0000H	64A	478,371	95,674	95,674	287,023	2,173,600
1505	0106	064.0000H	64A	478,371	95,674	95,674	287,023	2,173,600
1505	0201	064.0000H	64A	485,894	97,178	97,178	291,538	2,173,600
1505	0202	064.0000H	64A	485,894	97,178	97,178	291,538	2,173,600
1505	0203	064.0000H	64A	485,894	97,178	97,178	291,538	2,173,600
1505	0204	064.0000H	64A	485,894	97,178	97,178	291,538	2,173,600
1505	0205	064.0000H	64A	485,894	97,178	97,178	291,538	2,173,600
1505	0206	064.0000H	64A	485,894	97,178	97,178	291,538	2,173,600
1505	0301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302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303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304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305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306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401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402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403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404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405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406	064.0000H	64A	493,418	98,683	98,683	296,052	2,173,600
1505	0501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502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503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504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505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506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601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602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603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604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605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606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701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702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703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704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705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1505	0706	064.0000H	64A	499,061	99,812	99,812	299,437	2,173,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부가세포함)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1.05.14)	잔금 (입주시)	
1505	0801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802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803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804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805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806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901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902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903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904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905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0906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1001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1002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1003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1004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1005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1006	064.0000H	64A	504,703	100,940	100,940	302,823	2,173,600
1505	1101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102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103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104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105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106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201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202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203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204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205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206	064.0000H	64A	510,346	102,069	102,069	306,208	2,173,600
1505	1301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302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303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304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305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306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401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402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403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404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405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1505	1406	064.0000H	64A	515,989	103,197	103,197	309,595	2,173,600

주택가격 납부방법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납부비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가격	20%	20%	60% (주택도시기금 7,500만원 포함)
발코니확장비용	20%	–	80%

■ **납부기한**

구 분	납부기한
계약금	2021.03.15.(월) ~ 2021.03.24.(수)
중도금	2021.05.14.(금)
잔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 납부하거나 선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잔금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의 선납할인율로 계산된 이자금액을 할인하며(※선납할인율은 계약이후 별도 안내, 연 이자율 적용) 입금 금액과 함께 가산납부 처리, 중도금 등 구분액보다 과다 입금 및 할인된 경우 수납순서에 따라 다음 구분액에서 납부됨, 주택가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미납분에 대해 연체한 일수의 연 6.5%의 연체료가 가산됨 (현행,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납할인 금액은 예정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고,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은 일시불로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 없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선납기간에 납부한 중도금, 잔금(발코니확장비용 잔금포함)은 입금 즉시 선납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반환청구가 불가하오니 선납기간에 중도금, 잔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필요**

  ※ 잔금(발코니확장비용 잔금 포함)까지 완납했을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절대 불가하며, 기 납부액의 반환 처리가 불가함.
- **중도금 및 잔금 고지서**는 납부기한일 전에 주택분양계약서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주소변경 및 배달 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분양수납부에 확인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납부금 조회란에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시어** 연체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거주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사 분양수납부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fax.02-3410-7514) 하시기 바람.

공사 홈페이지에서 납부금 고지서(중도금 및 잔금고지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우측 "납부금 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아파트 분양금 조회 → 납부내역에서 중도금 등 확인 후 고지서 재발행하여 납부 금액 및 고객전용 입금계좌 확인

- 분양주택 **분양금 납부내역서**는 대출, 입주, 취득세 신고 등 납부내역 증빙용 서류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 발급 가능 **[계약 전에는 이용이 불가하며 계약이후 가능, 계약시 대상자에게만 고지서 발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람]**

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고객센터→ 증명서 신청 → 3. 주택분양금 납부내역서 바로가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 본인 명의의 주택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분양금 수납 담당자의 승인 후 출력 (담당자의 승인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출력 가능, 승인 시 문자 발송하여 승인 알림.)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울 시 **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여 팩스 또는 방문발급 안내 받으시기 바람.

- 분양금 과오납 시에는 과오납반환신청서(공사 분양수납부 비치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계약자 통장사본 1부를 분양수납부로 제출(fax.02-3410-7514)하시기 바람.

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과오납신청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고객서비스 → SH자료실 → "반환청구 및 계좌입금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제외 12:00 ~ 13:00]

- 휴일(토,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하시고자 하는 세대는 당일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금요일(공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완납하시거나, 입주 당일에 가상계좌 입금(이체한도 증액조정 등 관련사항 체크 필요) 후 이체확인증을 지참하시기 바람. 또한 대출을 실행하여 주말에 입주하는 세대는 반드시 입주 전(평일)에 대출실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4 입주자에 대한 융자(주택도시기금)지원 내용

- 주택가격 중 잔금에 주택도시기금(융자금, 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입주 전(열쇠수령 전) 잔금과 주택도시기금을 전부 완납(또는 대환 실행)하여야 함.
- 주택도시기금을 일시상환 할 시 잔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을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입주개시 약 3주전에 주택도시기금 고지서를 대신하여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및 일시상환 방법에 관한 별도 안내문을 계약서상 주소지 또는 주소변경 신청한 주소지로 발송 예정.**
- 주택도시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융자액이 변동되거나 지원이 없을 수 있음.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주택으로 세대별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가능하며, 대환(대출)시 상환 조건은 대환일부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함.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변경)일 전날까지는 공사에서 차입한 이율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고 대환일에 입주자가 융자금을 승계하며, 대환일 이후 적용이율은 연2.8%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됨]

지구 및 블럭	전용면적 (㎡)	대출금액 (천원)	대환 전 적용이율	대환 후 적용이율	상환조건	상환(대환)기한
A1- 5BL	66,70,75, 80,84	75,000	연 3.1%	연2.8%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비교하여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A1-12BL	64,74,84					

※ 2020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융자 이율 등 조건이 변경 될 수 있음.

※ 주택가격 및 대출(대환)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대출금리 적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홈페이지 참조 http://nhuf.molit.go.kr)

- **잔금에 포함된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은 일시상환(직접납부) 또는 대환(대출)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환의 경우 잔금 납부기한 내에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에서 대환 신청하여야 함.**
- **주택도시기금을 잔금 납부기한(입주지정기한 종료일)까지 대환 또는 일시상환하지 않을 시 아래의 대환 전 적용이율(연3.1%)로 주택도시기금 이자(월부금)가 잔금 납부기한 익일부터 부과됨.**

1. 일시 상환하는 경우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융자금) 대출을 원하지 않고 일시상환 할 경우에는 아래 해당은행의 상환계좌로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열쇠수령)하기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환계좌에 입금된 주택도시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도시기금대출금 상환에 충당되므로 금액을 초과 또는 부족하게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일시상환 후 재대출은 불가함.

주택도시기금 일시상환 은행 및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4-069377 (예금주: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금융센터)

-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은 선납할인 없음.
- 상기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상환되지 않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일시상환 계좌는 CMS계좌로 타행입금 및 주말입금이 불가함.

- 수분양자가 토,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할 경우 입주 전 평일(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까지)에 주택도시기금을 일시상환하여야만 월부금(주택도시기금 이자)이 발생하지 않음.
- 원활한 입주 진행을 위해 토, 일요일(공휴일)에 입주할 경우 입주 전 평일(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까지)에 주택도시기금을 일시상환 하시기 바람.

2. 대환(대출)받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융자는 계약자(명의변경자) 앞으로 대출되어 잔금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대환(대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우리은행에 직접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고 은행에서 공사로 승인 통보를 하였을 경우에 대출이 가능함. (대출문의 :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융센터 ☎02-3412-4681, 내선번호 310, 312, 313)
- 대환 신청시 대환 실행 예정일까지 지연되는 시간(2~3주)을 고려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기금 대환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대환)승인 전 세입자가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등
  -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전세자금) 대출 기보유자 등

■ 주택도시기금 이자(월부금) 납부안내

- 입주 전(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 일시상환 및 대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차주명의변경(대환 및 상환)일 전날까지 주택도시기금이자(월부금)가 가산됨
- 주택도시기금 상환(납부) 기한일 (잔금 납부기한 또는 건물보존등기 접수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시행 시 안내) 익일부터 연체료가 가산됨

  ※ 연체료 이자율 : 3개월 이내 연7.1%, 3개월 초과 연8.1% (현행,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융자금)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점심시간 제외 12시~1시]

5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공통사항

■ **위례지구 A1-5BL과 12BL은 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단지이므로 이와 관련한 중복청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 · 초본 기준)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외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및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수도권)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거주기간 법령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0.9.29.)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당첨이후 별도로 서류 제출하셔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함.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예외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으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 적용대상 : 일반분양,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기준일	지역우선공급비율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해당	수도권	해당	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11.19.)	50%	50%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2018.11.20. 이후 서울특별시 전입자(2년 미만 거주자)는 인천광역시 · 경기도 거주자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배정함**

■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2020.09.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반영)**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단,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 위에 언급한 1 또는 2에 해당하여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 가능(해당지역 청약불가)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해당지역은 물론 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도 청약이 불가.

〈표2〉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

* (1) '18.11.19.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18.11.19.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대상자로 청약 불가
*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1) 또는 (2)에 해당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다만,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0.9.29.)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당첨이후 별도로 서류 제출하셔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함.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예외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 모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기타지역 포함)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 중인지 또는 공고일 현재 거주 중인지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됨 규칙 개정으로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자는 당첨된 이후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위례지구 A1-5BL 또는 A1-12BL에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시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에 한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됨

– "신청자 본인" 이 위례지구 A1-5BL과 A1-12BL에 **중복신청**시 **신청무효**

– "신청자 본인" 은 위례지구 A1-5BL ,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A1-12BL에 **청약시 부적격**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동일단지 내에서 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단지의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당첨제한 등(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에 한함). 또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신청 대상자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A1-5BL 및 A1-12BL의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 당첨사실 등 청약제한사항 조회 방법 〉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거나, **대표신청자가 세대원의 동의를 거쳐 등록한 후 통합조회 가능함**
- 주택공급 신청자는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이** 재건축 · 재개발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관할 시 · 군 ·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단, 청약자 본인에 한하며, 조회일 직전 영업일까지 한국감정원에서 전산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당첨사실만 조회 가능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게시** : 2021.03.02.(화) 17:00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공사 홈페이지 → 화면 중앙 [분양] → 주택소유현황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확인)

■ **적용대상**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회현제2시민아파트 · 기타 기관추천 등) 신청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공급신청 자격자(아래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참조)'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에 포함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및 분양권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자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첨부된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판정)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봄.
   - 20제곱미터는 해당 주택의 전체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소유자별 공유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민원회신문(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물임을 확인)을 받아야 인정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된 연면적 200㎡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9.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공급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함.

※ 예시) 세대주의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세대원인 부모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임.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공급신청자가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함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검토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 공급유형별 세부 소득적용기준 및 자산보유기준은 아래 〈표3〉, 〈표4〉 참조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9.) 기준 아래 〈표3〉의 소득적용 기준 및 〈표4〉의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공급신청자의 자산보유 및 소득금액 적용**

– **소득기준의 검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 확정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함.

– 향후 소득 검색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함. **만일 부적격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적자료를 보유한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 공급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 현황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조사대상자의 의무**

– 공사가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전원의 소득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함.**

〈표3〉 소득적용 기준

■ **소득기준 검증은 당첨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조사대상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상시 · 일용 · 자활 · 공공), 사업소득(농업 · 임업 · 어업 · 기타), 재산소득(임대 · 이자 ·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금회 공급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가 적용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적용함**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단위 : 원)

구분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54,983이하	6,226,342이하	6,938,354이하	7,594,083이하	8,249,812이하	8,905,541이하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이하	7,471,610이하	8,326,025이하	9,112,900이하	9,899,774이하	10,686,649이하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655,729원) 추가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2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786,875원) 추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가구원수 산정 기준**

구 분	가구원수 산정 기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인 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도 합산함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 · 초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소득금액 조사방법**

– 상시근로자(휴직자 제외)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휴직자 제외)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표의 상시근로 소득자료 반영순위(① 건강보험공단 → ② 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이 있음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한국고용정보원 : 실업급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군인연금 : 국방부퇴직연금급여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보상급여등

■ **부적격자 소명 안내**

– 소득조사 결과 기준초과로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자료 제공기관(위 표의 "소득자료 출처"참조) 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반드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표4〉자산[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보유 기준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 공유 시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 자산도 합산함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

적용대상	자산보유기준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 가액산정기준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주택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 · 군 · 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 · 토지) 공시가격 확인방법

- 방 문 확 인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 · 등록세 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9년식 자동차를 2018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블럭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167	84	83
위례지구	A1–5BL	066.0000H	18	9	9
		070.0000H	14	7	7
		075.0000H	24	12	12
		080.0000H	36	18	18
		084.0000H	36	18	18
	A1–12BL	064.0000H	8	4	4
		074.0000H	15	8	7
		084.0000H	16	8	8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1.11.20.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출산예정일 포함)를 제출한 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해당 분양주택의 입주가 촉박하여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불법낙태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 (〈표3〉 소득적용 기준 참고)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4〉의 자산[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위례지구 A1–5BL과 A1–12BL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단지이므로 이와 관련한 중복청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2〉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1인이 **다자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 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배점기준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14.11.20.이후 출생)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5)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점 계산시 제외함.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0.9.29.)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당첨이후 별도로 서류 제출하셔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함.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예외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4) 산정 : 만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신청자 및 배우자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 해당 시 · 도 거주기간(5) 산정 :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해당 시 · 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위의 유의사항 확인필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블럭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83	43	40
위례지구	A1-5BL	066.0000H	9	5	4
		070.0000H	7	4	3
		075.0000H	12	6	6
		080.0000H	18	9	9
		084.0000H	18	9	9
	A1-12BL	064.0000H	4	2	2
		074.0000H	7	4	3
		084.0000H	8	4	4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1955.11.19.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분

④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모(母)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음)**

※ 세대주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기간이 1년일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1년임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표3〉 소득적용 기준 참고**)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4〉의 자산[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위례지구 A1-5BL과 A1-12BL은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단지이므로 이와 관련한 중복청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2〉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분양 "〈표5〉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1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블럭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502	252	250
위례지구	A1-5BL	066.0000H	58	29	29
		070.0000H	44	22	22
		075.0000H	70	35	35
		080.0000H	108	54	54
		084.0000H	104	52	52
	A1-12BL	064.0000H	27	14	13
		074.0000H	46	23	23
		084.0000H	45	23	22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로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고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한부모가족**(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기입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입주전까지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증빙시 계약이 해제되고 입주가 불가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분(〈표3〉 소득적용 기준 참고)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4〉의 자산[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위례지구 A1-5BL과 A1-12BL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단지이므로 이와 관련한 중복청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2〉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본 분양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개정된 규칙 내용인 "「민법」 제 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음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018.12.10.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②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2순위 자격 결격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해당 분양주택의 입주가 촉박하여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불법 낙태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함.**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해당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각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숙지 후 가점오류로 인한 부적격을 미리 방지하시기 바람**

항목		기준	비고
가. 가구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퍼센트)이하인 경우: 1점	아래 가점표 참조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 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가점선택 불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불가

※ 항목 마의 경우 신혼부부는 자녀의 나이[한부모 가족에 한함] 가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점계산시 유의하시기 바람

[가점계산시 유의사항]

(가) 가구소득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소득 가점기준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4,443,986	4,981,074	5,550,683	6,075,266	6,599,850	7,124,43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나) 자녀의 수

※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산한(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미성년 자녀를 말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를 인정함(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현재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함

–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계산 시 제외함.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3. 위 1,2에 해당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0.9.29.)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당첨이후 별도로 서류 제출하셔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함.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예외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신혼부부만 해당, 한부모가족 적용불가]

※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기재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동일 단지 내에서 신청자 1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생애최초 특별공급

■ **배정세대수**

지구 및 블럭		주택형	계	해당	수도권
합계			418	211	207
위례지구	A1-5BL	066.0000H	47	24	23
		070.0000H	35	18	17
		075.0000H	58	29	29
		080.0000H	90	45	45
		084.0000H	90	45	45
	A1-12BL	064.0000H	21	11	10
		074.0000H	38	19	19
		084.0000H	39	20	19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⑦)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미혼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음(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음)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을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 확인되는 소득자료를 적용함.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분**(〈표3〉 소득적용 기준 참고)**

(단위 :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⑦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4〉의 자산[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위례지구 A1-5BL과 A1-12BL은 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단지이므로 이와 관련한 중복청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2〉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동일단지 내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기타 특별공급

1.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따라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특별공급은 미적용)

– 추천기관 현황(예시) : 국가유공자(서울지방보훈청), 장애인(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의사상자(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다문화가족(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중소기업근로자(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기준은 각 해당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관에서 미통보된 자가 신청시 무효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 중 **신청기간(2020.11.30.~12.01)**에 청약신청한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후 무주택 여부,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을 심사하여 적격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함.

※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청약신청(인터넷접수만 가능)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체결 불가**

※ **해당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도 청약신청을 하여야 기관추천 예비자로 확정**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먼저 자격요건을 갖춘 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어 공사에 통보된 분만 청약신청 가능함.**(임의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기관추천 예비자 및 다른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의 낙첨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2. 철거민 특별공급(회현제2시민아파트 대상자 및 동남권 철거민)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철거민 :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2008.04.17. 이전 규칙)」을 적용받아 철거소재지 구청에 신청접수하여 금회 분양대상단지에 해당구청으로부터 적격으로 확정통보된 자

• 동남권 철거민

■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세대에 속한 자 모두 무주택]**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서울 중구청 회현시민아파트 철거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동남권 철거민 포함) 중 **신청기간(2020.11.30.~12.01.)에 청약신청한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며, 당첨자 선정 후 무주택 여부, 청약 제한사항을 심사하여 적격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함.**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포기처리 함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의 낙첨자 및 기관추천 예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분**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신청 불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사항에 해당되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 분은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며, 2순위 청약이 가능함(청약제한사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확인가능)
- 위례지구 A1-5BL과 A1-12BL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단지이므로 이와 관련한 중복청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7. 중복청약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참조]
  - 동일 단지내에서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중 2인이 각각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동일 단지내에서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불가.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2〉 거주기간 개정법령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해당지역 · 수도권지역)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2순위(해당지역 · 수도권지역)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후에는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날 추가접수 받지 않음

  ※ 1순위자가 2순위 신청일에 접수할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접수됨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르고, 1순위 내 동일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 · 향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에 한함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며, 통장사용 불가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공급신청자가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폐기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예비자 공급대상 동호수는 본 공고문에 게시된 계약기간 종료이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에 대한 동 · 호수 배정은 사업주체의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는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선정하며,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예비입주자는** 공사 분양수납부로 방문하시거나 서면의 방법으로 신청자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 본인의 책임이며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됨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함
- 특별공급 예비자는 지역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 특별공급 당첨 세대 중 부적격 당첨,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세대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소진 후에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됨
- 기관추천 예비자의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처리를 준용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5〉「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선정함.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시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됨

7 중복청약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단지내에서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청약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자 본인이 A1-5BL과 A1-12BL(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중복 청약한 경우 무효 처리되며,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A1-5BL과 A1-12BL 각각 신청시 부적격이므로 중복청약으로 인한 부적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 "신청자 본인" 이 위례지구 A1-5BL과 A1-12BL에 **중복신청**시 **신청무효**
    - · "신청자 본인" 은 위례지구 A1-5BL ,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A1-12BL에 **청약시 부적격**

※ 동일세대구성원 범위 (규칙 제2조 제2의3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본인"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다른주택(당첨자발표일이 다름)에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당첨된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첨 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인 1인이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또한,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동일단지 내에서 신청자 본인에 한해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 가능하며, 이 외의 중복신청은 불가
- **동일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불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는 예외이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세대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민**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신청 · 계약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위조 등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도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입주자저축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을 신청 · 계약한 경우
- 서류결격 또는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공급관련법령에 위배될 경우

※ 입주자저축 양수 · 양도 등 주택법(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시 당첨자로 관리되며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함

■ 계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10%]을 공제함

■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로**(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전산관리되고 해당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부적격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8 신청일정 및 장소

최하층 우선배정 (노약자 · 장애인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3명 이상)에 한함)

■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 금회 분양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나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중에 ①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 배정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선택하여주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고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와 ③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최하층 배정을 신청할 경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에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일자	신청장소	신청방법
특별공급	기관추천, 철거민 (회현제2시민아파트)	2020.11.30.(월) ~ 12.01.(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한국감정원 청약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09:00~17:30)
	다자녀 특별공급	2020.11.30.(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20.12.01.(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020.12.10.(목)	•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서비스(청약홈 APP 설치)	인터넷청약 (08:00~17:30)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 (09:00~16:00)
	2순위	2020.12.11.(금)		

- 상기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하며, 공급구분별 · 순위별 신청일자 외에는 신청할 수 없음. (순위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은 접수건수가 공급세대수를 미달하더라도 다음날 접수받지 않음.
- 일반공급 1순위 신청접수 결과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될 경우 2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후에는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날 추가접수 받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접수 경쟁률 및 청약마감여부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의 '공고 및 공지'에, 일반공급 청약접수 경쟁률 및 청약마감 여부는 주택청약사이트【www.applyhome.co.kr → 청약 경쟁률】에 각 순위접수 당일 21:00 이후에 게시되며,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9. 신청방법**」 **참조**

9 신청방법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다만, 신청 당일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나 정정가능)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여부, 신청순위,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재당첨제한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청약취소는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의 착오나 실수에 대한 착오기재는 소명이 불가함으므로 청약신청시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며, 본 공급 주택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으로 중복청약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신청접수일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인터넷 신청

○ 주택 청약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청은 받지 않음**

– 특별공급은 공사 홈페이지, 일반공급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하셔야 함

○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함.

■ **신청시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간	09:00~17:30 (해당일에 한함)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시간	08:00~17:30 (해당일에 한함)

-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람.**

■ **신청방법**

- **특별공급**
  – 해당 신청일에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후 개인 공인인증서 및 도로명주소로만 청약신청 가능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주택분양 → 인터넷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인적사항 작성/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일반공급**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청약하시기 바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청약신청일 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아파트 ※ 모바일서비스에서도 신청 가능(청약홈 APP 설치)

신청시간	– 08:00~17:30 ※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완료 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 시 유의사항**

- 위 신청접수 시간 등 업무처리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청약관련 업무처리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시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공급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여부, 신청순위, 무주택여부 및 기간, 재당첨제한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일로부터 1년간(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에 한함)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하여 공사에서 확인**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공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명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가입한 은행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입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청약통장 가입자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정보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은행창구 청약신청 [일반분양 신청자중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불가자]

■ **신청시간 :** 창구청약 가능시간은 09:00~16:00이며, 일반분양 신청자중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은행 창구에서 방문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장소 :** 청약통장 가입은행

■ **구비서류 :** 아래 필요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본인 신청 시	① 주택공급신청서	청약장소 양식비치
	② 청약통장	
	③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④ 본인 주민등록증	
추가 구비서류 (배우자 및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임.	① 위임장	청약장소 양식비치
	② 본인(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③ 본인(청약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공사에서 확인함.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문 공고나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공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10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당첨자는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 확인서류를 비교하여 적격확인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계약체결기간
• **일시** : 2020.12.16.(수) 17:00 이후 • **장소**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APP"청약홈" 설치 ※ 감정원은 2020.12.16.(수) 00:00에 발표됨	[등기우편 접수] 2020.12.21.(월)까지 (2020.12.21.소인분까지 포함)	* 2021.03.15.(월)~03.24.(수) (09:30~17:30) * **계약체결장소는 당첨자 발표시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발표장소(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문의 전화에는 개별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공사 홈페이지에 함께 발표됨.
- **상기기간은 코로나19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첨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인 터 넷 확인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청약정보 → 대상자 조회 →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제공일시 : 2020.12.16.(수) 17:00 이후 10일간 확인가능]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당첨자발표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조회** ※ 모바일서비스에서도 확인가능(APP 설치)
전화(ARS) 확인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5 → 2 주민등록번호# [제공일시:2020.12.16.(수) 17:00이후 10일간 확인가능]

*** 전화(ARS) 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문의 전화에는 개별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명단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간은 **09:30~17:30**이나 적격 당첨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경우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계약금 고지서 수령 후 은행 영업시간(9:00~16:00) 내에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오후 3시 이전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1.03.24.(수)**은 계약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계약체결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의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분양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당첨자에게 있으며,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여 적격(정당)당첨자로 확인된 후에 계약체결 가능.
- **계약금(발코니 확장 계약금 포함) 납부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계약금(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만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입주자격)을 취소함.**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등기우편 제출]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2020.12.21.(월)]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당첨자로 관리, 청약 통장 효력상실)**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 자격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받고 있으며(2020.12.21.소인분 포함) 도달 이후 수취여부에 대한 개별응대가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서류 미비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개별연락드릴 예정임. 또한 제출처를 미기재할 경우 서류수취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다음 예시사항대로 제출하셔야 함.**

  제출예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분양수납부 (위례지구A1-5BL 또는 위례지구A1-12BL 당첨자격확인 서류제출)
-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 미제출시 단순 계약포기로 간주(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서류제출을 통하여 부적격 사유를 입증해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됨.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원본만 인정됨(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로 수취한 서류는 인정불가)**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관련 추가서류 제출은 해당자에게 별도로 안내예정임.
- **서류발급 시 아래 내용에 따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아래사항대로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재제출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리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기관추천 · 철거민 특별공급**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①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③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필수서류임.
	○		④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⑤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서 확인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위례지구 A1-5,12BL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철거민 제외 · 발급기록이 없어도 제출하셔야 함
		○		세대원	·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기준완화와 관련하여 예외규정적용을 위한 전 세대원의 출입국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자만 제출 필요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다자녀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②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③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와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당첨자발표 게시글 참조)**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제출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발급 원본 제출** (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출산예정일 기재 필요) ※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 파악을 위해 '상세'내역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며, 입주전까지 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필요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④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일자 확인 필요시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와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당첨자발표 게시글 참조)**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제출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발급 원본 제출** (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출산예정일 기재 필요) ※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인 이상 세대로 신청인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동일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6〉 참조**	본인	· 신청인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2020.11.19.) 이후에 주소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	②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②, ③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③제출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철거민		○	①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①, ②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②제출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해 당 자 격	발급기준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본인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영업자	본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본인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납부여부 확인용 서류이며 가구원별 총 소득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심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본인	•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④ 세무서

■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 공급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에 주소변동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표기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제출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직계존속	· 2007.12.31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의 경우 제출
		○	⑤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직계존속	
		○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⑧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⑨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그 세대원 전원**(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위례지구 A1-5,12BL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내 첨부 파일 참조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⑩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당첨자발표 게시글 참조)**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자 중 태아 세대구성원 산입 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제출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발급 원본 제출** (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출산예정일 기재 필요) ※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		⑪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세대원	·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기준완화와 관련하여 예외규정적용을 위한 전 세대원의 출입국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자만 제출 필요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만 인정)지참 ② **계약금 납부영수증(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영수증 포함) 원본** ③ 당첨자 도장(서명 가능)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포함) 으로 간주**	인감증명 방식	① 당첨자가 인감날인한 위임장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서명확인 방식	①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당첨자 도장
		④ 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1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3급 이상 지체 · 뇌병변 장애인 및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 · 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림.

■ 편의시설 설치는 공정상 2021.03.24.(수)까지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시공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설치가 시작되므로 신청 후 취소나 변경이 절대 불가함.**

■ **준공 시까지 설치기간이 촉박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시 해당부분의 시공이 진행 중일 수 있음.**

구분	선택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기성제품 경사로 적용]
	공용욕실	좌변기 안전손잡이[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1개 설치]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

※ 편의시설로 설치되는 안전손잡이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서는 계약 장소에 비치함.

신청 시기	신청시 구비서류
계약 시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 입주자(계약자)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안내

■ 입주 후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 방문제도를 실시함.

■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일정

단 지		사전점검 방문일(예정)	입주개시일(예정)
위례지구	A1–5BL	2021.06.(예정)	2021.08.(예정)
	A1–12BL		

※ 상기 일정은 준공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계약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입주지원센터는 입주개시 3일 전, 관리사무소는 입주개시 14일 전에 개소하며, 개소 전에 입주개시일 및 상세내용을 개별 안내함(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 지구 · 주변 여건 및 단지 여건, 기타 유의사항

지구 · 주변 여건 및 단지 여건

지구 및 주변 여건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여건변화 및 민원사항 해소 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제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가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관련도서 및 상세도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및 위례사업부(Tel. 031-786-6433)에서 열람 가능함.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차량 ·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주민센터, 경찰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송파구청, 성남시청, 하남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열병합발전소 가스정압시설,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송파공영차고지, 복정역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 외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당해 지구는 인근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과,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의한 도로교통소음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 장지공영차고지, 서울공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관련 유의사항

○ 관련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학생수용 및 교육자치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사정에 따라 학생 수용 및 배정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 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람.

학교	학교명	위 치	해당 교육청	연락처
초등학교	거원초등학교 (02-6919-3700)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2길 26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2-3434-4483
중학교	거원중학교 (02-405-4200)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2길 30		02-3434-4482

단지공통사항

○ 입주 후 주변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지구 내 · 외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거주방식에 따라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저층부 일부 세대는 도로, 공원녹지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 인하여 실내가 투시될 수 있고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 조망권 침해 및 보안등(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 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세대 및 지상주차장 주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채광용 천창 등으로 일부세대의 경우, 차량의 진출입시전조등, 경고음 및 공회전 등에 의한 눈부심, 소음, 매연 등 불편사항을 겪을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대지의 녹지 공간 확보로 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워 이삿짐 운반 시 후면 창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전, 후면 보차도를 이용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함.

○ 필로티 부분이 높아 우천 시 필로티 부분으로 비가 많이 들이칠 우려가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설비 등의 설비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지역난방방식이므로 개별난방에 비하여 세대 난방공급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현관부위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를 사용하여 일괄소등하는 경우 리모콘전등스위치에 내장된 정전보상기능 시간초과시 재설정이 필요 할 수 있음.

○ 영구배수공법에 따른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지역난방요금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문은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 동출입구의 통로 형태가 다를 수 있음.

○ 단지 경계에는 별도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관목 및 교목 등을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안전을 고려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녹지와 단지의 지표면 높이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발코니에 위치한 기둥의 모양, 드레인 위치, 배관 및 수전 위치, 점검구 위치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시공사가 달라 타입 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 세대 안방 발코니는 비확장으로 공급됨.

○ 세대 내 · 외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지상에 쓰레기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일부 인접세대의 경우 냄새, 미관 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손을 씻는 수전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용중단으로 불편함이 있음.

○ 거실발코니 및 일부 침실발코니를 확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발코니 확장면적은 확장 전 발코니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환기는 직접배기이며, 욕실은 환기를 위한 공동연도를 사용하므로 이웃세대의 환기팬 가동으로 인한 냄새(주방의 음식 조리 시 냄새, 화장실의 담배냄새 등)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내부 미관이 저해되거나, 설비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 및 소음 발생량이 다를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우려가 있으므로 창문 및 실외기 그릴을 닫고 보온조치를 하는 등 동파에 대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 (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각동 동지하에는 아파트의 급수, 급탕, 난방 및 배수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시 발생한 소음이 저층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지붕층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의 일부세대에 소음, 시각적 사생활 침해,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별로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주방TV폰 등 마감자재는 동일 평형일지라도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단지별로 제작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르며 설치수량 및 배치 구조도 실내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일부세대 간벽 및 외벽에 면하는 침실의 콘센트는 결로현상 및 소음 전달방지 등을 위해 다른 세대와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 동체감지기는 아파트 시작층인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어 있음.

○ 실내 및 외부에서 일부 기능의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홈네트워크 설비로 설치됨.

○ 지하주차장 램프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상부 채광을 위한 TOP-LIGHT 설치로 인해 조망에 불리 할 수 있음.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동의 저층부 등 일부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 일조권 소음에 영향을 받을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기구, 운동기구 등 조경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휘트니스 시설 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거나 인접한 공가세대가 있을 경우 열손실이 커지므로 초기난방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 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복도와 발코니 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진 · 출입부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및 연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세대 발코니와 지상바닥의 높이 차이가 적어 빗물 유입이 우려됨.

○ 입주 후 입주자가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및 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 최소 유효 높이에 따라 계획되어(사업승인시점 기준) 일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 **(진입제한높이 2.3m, 주차공간 높이 2.1m 제한구역이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지붕층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옥외의 보안등은 디밍시스템이 적용된 보안등으로 설치됨.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 방지를 위해 송풍기 가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송풍기 미가동 시와 일부 환기 취약장소는 결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해당부위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최상층 발코니, 대피실 등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됨.

○ 전용 84㎡의 안방 스위치는 리모콘 스위치로 설치됨.

○ 세대 내 월패드에서 승강기를 호출할 수 있음.

○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로 지하주차장 블루투스 비상콜 기능과 비접촉 진입 가능한 공동현관, 승강기 자동 호출 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내부에 1,200만 화소급 360도 전방위 카메라를 적용하고 최대 12면까지 주차면 감시를 통해 주차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주차위치 정보시스템 및 스마트 원패스시스템과 연계구축되어 주차위치 정보를 제공함.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수도계량기함, PD점검구가 신발장 내부 또는 하부에 설치되어 있고 씽크대 개수대 하부에 난방분배기, 온도조절시스템, 싱크수전 절수기, 음식물탈수기가 설치되어 공간이 협소하므로 해당가구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난방,급수,급탕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 · 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영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보관소 및 쓰레기수거함 등이 있어 주변세대에 냄새, 미관저해, 해충, 소음, 불빛 등의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일부 세대는 재활용품보관소 및 쓰레기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경사도로 및 곡선도로, 주 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생활불편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될 수 있고, 지하 최하층 승강기홀에 설치된 제습기를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습기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전기료 등 유지 ·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여건(A1-5BL)

○ 위례지구 A1-5BL(17단지)의 총세대수는 1,282세대로 모두 공공분양으로 구성되었음.

○ 위례지구 A1-5BL(17단지)은 계단형 아파트 18동으로 구성되었음.

○ 위례 A1-5BL의 명칭은 위례포레샤인 17단지로 입주자는 시공사 브랜드 사용을 우리공사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시설은 지하 3개 높이로 구성되며, 지상 비상차로는 비상차량(소방차 등), 이삿짐 차량, 쓰레기 수거차량 사용가능하고, 개인차량은 사용불가 함.

○ 지하주차장은 1701~1710,1714~1718동 구역은 2개층, 1711~1713동 구역은 1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지 배치계획 상 불가피하게 모든 동의 지하주차장이 균등하게 계획되지 않았음.

○ 단지내 높이차이 및 동별 위치에 따라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다를 수 있음.

○ 단지내 높이차이로 인하여 주 · 부출입구로부터 각 주동 출입구까지의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넓이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705,1709,1710,1711동을 제외한 모든 주동은 입면변화에 따른 거실, 침실부위 일부가 돌출 형태로 시공되어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대지의 녹지공간 확보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으로 인해 저층부(1,2층)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

○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운행 및 불빛(차량전조등 포함),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사생활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및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설비 등의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이동통신용(스마트폰 등) 중계기 설치는 관계법령(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준공시 지하주차장, 옥상(1704동, 1706동,1707동,1712동,1713동,1717동,1718동) 등 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가 완료되며, 세부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은 현재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실시설계 단계중이므로 각 이동통신사의 현장 실사 후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은 변경될수 있음.

○ 단지 내 아파트와 상가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산책로 등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 산책로에서 보일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 최소 유효 높이는 2.3m(주차공간 2.1m)로 계획되어 일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출입구–1 입구에 차량출입통제용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주거/비주거 차량과 공용 사용되며, 1701동 주차램프 진입후 지하1층에서 주거/비주거용 주차 차단기가 별도 설치되어 주거 및 비주거 용도별 주차장으로 사용됨.

○ 주출입구–2 입구에는 주거용 주차 차단기만 설치되어 1701동과 1717동 사이 주차램프로 주거용 차량만 진입 가능함.

○ 부출입구 입구에 차량출입통제용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주거/비주거 차량과 공용 사용되며, 1712동 주차램프 진입후 데크층에서 주거/비주거용 주차 차단기가 별도 설치되어 주거 및 비주거 용도별 주차장으로 사용됨.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문은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의 문주 형태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입면디자인(저층부 도장 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몰딩, 창호, 문주, 부대복리시설. 옥상 장식물,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은 생울타리로 조성되며, 휀스 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조경 수목, 시설물 등은 디자인 의도 및 수급여건 등에 따라 위치와 형태, 재료가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보행자의 시선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및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의 각 종 기구와 조경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등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 활용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술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단지외관, 조경시설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진 · 출입부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및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옥상 일반구간에는 옥상조경이 계획되어있으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상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었으며, 계단실은 폐쇄형으로 설치되었으나 일부창호(5개층마다 1개소)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TOP LIGHT,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주차관제용 출차주의등,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로 차량 진입 시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일부 겹치므로 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 보행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소지가 있음.

○ 경관조명(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야간에 각동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TV(FM)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1710동), 피뢰침(1710동)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1705동, 1707동, 1709동, 1710동, 1711동에 피뢰 설비용 수뢰부가 설치되었음.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제습장치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장비 가동에 의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함.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은 기둥 디자인에 따라 설치 높이가 다를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전용 급속충전기(50KW) 3대, 완속충전기(7KW) 6대가 1712동과 1713동 사이 (지하1층) 1개소(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대), 1718동과 1714동 사이 (지하2층) 1개소(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대), 1708동과 1706동 사이 (지하3층) 1개소(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대) 총 3개소에 설치됨.

○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은 34대로 충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급속 1개소)

○ 재활용품 보관소는 단지 내 10개소가 설치될 예정임. 각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하고 이와 관련한 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제연 휀룸, 환기탑, 휀룸이 설치되어 해당설비 가동 시 진동, 소음, 열기, 급 · 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음.

○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소음 및 냄새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외부 몰딩마감 적용으로 발코니 외부 몰딩구간(4층 바닥 위치)에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됨.

○ 신재생에너지로 연료전지(90kW) 시설이 설치되며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전기와 온수를 생산, 사용하게 되고 사용되는 도시가스 비용 등 유지 ·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는 1개의 코어에 각 1대씩 있으며, 단지 내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인용, 화물겸용으로 설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옥외용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인용 임)

○ 승강기 제어반은 최상층 승강기 승강로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8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므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마감 중 석재마감 부위는 천연석으로 시공되며, 천연석의 특성상 약간의 색상차이 또는 특정무늬가 발생할 수 있음

○ 1717동 지하주차장 램프와 세대가 인접하거나 일부 직교하는 구간이 있어 야간에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1701동,1712동 하부로 차량 통행이 있어 차량 입출차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1701,1708~1711,1714,1715동 1층 및 1702,1703,1718동 2층 세대는 발코니 외부가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지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지붕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주민공동시설 지붕에는 보안상 취약 구조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지붕 파라펫에 난간대가 설치될 예정임.

○ 1712동, 1713동 오픈발코니 우수드레인이 인접한 발코니로 배수되어 우천시 드레인 주변 물고임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1701동 주출입구 , 1712동 부출입구에는 주거/비주거 주차장 구분 관리를 위해 추가로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여 관리됨.

○ 1701동, 1712동, 1717동은 주출입구 문주 및 경비실 설치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단지 진출입 차량 등에 의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따른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발생할 수 있음.

○ 1703동 2층에는 파티룸, 3층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1718동 저층 세대는 1층 보육시설의 음식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701동, 1702동, 1712동은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냄새 등 사생활권 및 환경권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배치 및 사용편의성

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715동 앞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1702동을 제외한 전체동 옥상(지붕층)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시설이 옥상 바닥에 노출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가동 시 일부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태양광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분양자료와 다를 수 있음.

○ 저층부 마감자재는 석재, 석재뿜칠, 도장마감 등으로 동별로 서로 상이함.

○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동 지붕층에 설치되어 공용부 전력으로 공급되며,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또는 배관)시설이 일부 노출될 수 있음.

○ 70C 및 70D는 거실 일부 비확장임

○ 위례지구 A1-5BL은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급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았음

단지여건(A1-12BL)

○ 위례지구 A1-12BL(15단지)의 총세대수는 394세대로 모두 공공분양으로 구성되었음.

○ 위례지구 A1-12BL(15단지)은 계단형 아파트 5동으로 구성되었음.

○ 위례 A1-12BL의 명칭은 위례포레샤인 15단지로 입주자는 시공사 브랜드 사용을 우리공사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501~2동 주변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501동~1505동 옥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시설이 옥상 바닥에 노출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가동 시 일부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1501동 지상1층에 맘스카페, 어린이집, 1503동 데크층에 경로당 및 관리사무소, 1505동 데크층에 멀티룸, 게스트 하우스,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동에 비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501동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침해 및 야간차량전조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502동과 1503동 사이에 소셜다이닝, 1503동과 1504동 사이엔 휘트니스센터가 위치하여 단지 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501동 어린이집, 1503동 경로당 및 관리사무소의 옥상바닥 노출구간으로 미관저해 요소가 있음.

○ 1501동과 1505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와 유아놀이터가 있으며 1502동 북측 및 1503동과 1504동 사이에 주민운동시설이 있으며, 1502동과 1503동 사이, 1503동과 1504동 사이에 텃밭이 위치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차양식 자전거보관소는 1501동 2개소, 1502동 1개소, 1503동 1개소, 상가와 유아놀이터 사이에 1개소 총 5개소가 있으며, 자전거거치대는 1502동 필로티하부 1개소, 1504동 필로티하부 1개소, 1503동 지하주차장 2개소, 1504동 지하주차장 4개소, 1505동 지하주차장 3개소 총 11개소가 있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조경수목 포함)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곽은 1502동, 1503동, 1504동 동측 근린공원과 인접한 구간은 휀스 시설이 설치되며 1504동, 1505동 남측도로 인접 구간은 생울타리로 조성됨 북측과 서측은 별도의 외곽 경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 1501동, 1502동, 1504동 1층에 필로티가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및 간섭 등으로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각 동호별 필로티 높이가 다를 수 있어,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차시설은 지하1층(데크)~지하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도로가 없고 비상차로와 보행로가 있음. [단,비상차로에는 비상차량(소방차 등), 이삿짐차량, 쓰레기 수거차량만 사용가능, 택배차량이나 개인차량 통행불가]

○ 지하1(데크)주차장은 1502동, 1503동만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2층 주차장은 전 동과 연결되어 있음.

○ 지하 동출입구 통로구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옥외 엘리베이터는 1503동 후면 1대, 근린생활시설 옆 1대, 1504동과 1505동 사이 1대 있음.

○ 난방 적산열량계, 급수미터기, 급탕미터기는 복도 및 전실(PD내)에 설치되어 유지관리 및 소음발생으로 생활의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음.

○ 64형, 74형, 84형 세대는 급수, 급탕, 난방 배관용 점검구가 엘리베이터 전실 PD에 설치되어 공용설비 유지관리 및 미관저해, 소음발생에 따른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층 엘리베이트 홀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클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각 동별 승강기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부정지층은 정지버튼이 없을 수 있음.

○ 우수배관 설치로 우천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개의 코어에 각 1대씩 있으며, 단지 내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자용, 화물겸용으로 설치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부대시설용과 옥외용 승강기는 장애자용, 화물겸용이며 비상용은 아님)

○ 승강기 기계실이 있는 타입으로 상층부 세대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됨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로 연료전지(30kW)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전기와 온수를 생산, 사용하게 되며, 사용되는 도시가스 비용 등 유지 ·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인근동(1504동,1505동) 저층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1502동 101호 앞(측면) D.A 환기구에 의해 인접세대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계단실 및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되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 의거 계단실 창호를 자동폐쇄형으로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각동 아파트 세대로 엘리베이터 탑승이 가능함

○ 지상파 TV(FM) 공청 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1502동 옥상 옥탑층에 설치되어 있음.

○ CCTV는 지하주차장 및 각 출입문 및 옥외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CCTV는 각 가정에서 TV로 실시간 시청 가능함.

○ 원할한 이동통신을 위한 전파 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단지 내 옥탑 중 1개소에 이동통신용 안테나 1식이 시설될 수 있음(전파 환경에 따라 시설이 없을 수도 있음). 전파특성 시험은 준공 시점에 가능하므로 시험 후 결과에 따라 해당 설치 동이 결정되며 만약 시설 시 전자파 유해 수준은 시설 표준공법 채택으로 무해 환경 수준으로 시공 예정임.

○ 1501동~1505동 저층부 석재부위는 이끼가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내 아파트와 상가 등의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산책로 등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 산책로에서 보일 수 있음.

○ 이동통신용(스마트폰 등) 중계기 설치는 관계법령(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준공시 지하주차장에 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가 완료되며,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실사 후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에는 환기가 가능한 창문형자동폐쇄장치가 매 층마다[지상1층 제외]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실에는 5개 층 당 1개소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공용부 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전용 급속충전기(50KW) 1대, 완속충전기(7KW) 2대가 지하주차장 2층 1503동 인근에 설치됨.

○ 아파트 외벽에 노출된 피뢰접지가 1501동, 1502동, 1503동 일부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어 입면 미관이 저해 될 수 있음.

부대시설 부문

부대시설부문(A1-5BL)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건립되는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은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입주지정일 이후 운영은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휘트니스 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관리사무소, 피트니스/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 단지내 별도의 무인택배보관함이 주출입구 경비실, 부출입구 경비실, 셀커뮤니티, 경로당, 1703동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조명시설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적용된 알루미늄창호는 환기 부족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지 않음.
○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가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입주지원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내 별도의 택배보관함 4개소 설치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지하주차장에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 주차영역과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용(위치)
부대시설	진입도로		· 20m 도로(주출입구), 27m 도로(부출입구)
	단지내도로		· 4 ~ 6m 도로
	관리사무소		· 1701동(관리사무소, MDF, 방재실, 용역원휴게실)
	경비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총 2개소
	통신실		· 각동 지하 1층 및 1701동, 1708동, 1709동 지하2층
	기계/전기실		· 지하주차장(우수기계실 포함)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1,624대 (장애인주차 73대 4.47%, 여성주차 170대 10.41%)
복리시설	휴게시설		· 1710, 1711동 사이 지상1층 [식재,시설물,포장] · 1709, 1710동 사이 지상1층 [식재,시설물,포장] · 1704동, 1707동 사이 배면 지상1층 [식재,시설물,포장]
	주민공동시설	**창의센터**	· 1703동 지상1층
		게스트룸	**· 1703동 지상2~3층**
		셀커뮤니티	**· 1705동 인근 지상1층**
		피트니스/골프연습장	**· 1708동 지하1층**
		주민카페/동호회실	**· 1710동 지하1층**
		웰컴라운지	**· 1711동 지하1층**
		맘스라운지	**· 1717동 지하1층**
		DROP ZONE	**· 1718동 배면**
	경로당		· 1709동 지하1층
	작은도서관		· 1714~1715동 지하1층 [문고포함]
	어린이집		· 1718동 지상1층
	주민운동시설		· 1712, 1713동 사이 지상1층 (실외-식재, 시설물, 포장) 주민운동시설 1 · 1715, 1718동 사이 지상1층 (실외-식재, 시설물, 포장) 주민운동시설 2 · 1705동 배면 지상1층 (실외-식재, 시설물, 포장) 주민운동시설 3
	어린이놀이터		· 1712, 1713동 사이 지상1층 어린이놀이터 1 · 1716, 1717동 사이 지상1층 어린이놀이터 2 · 1705, 1709동 사이 지상1층 어린이놀이터 3 · 1718동 전면 지상1층 유아놀이터

부대시설부문(A1-12BL)

[부대시설 부문]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의 실구획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은 지상에 6대(근린생활시설 3대(장애인 주차구획1대 포함) 포함), 지하에 495대로 총 501대이며, 주차구획은 일반 주차구획[2.3M * 5.0M] 290대, 확장형 주차구획[2.5M * 5.1M] 159대, 장애인 주차구획[3.3M * 5.0M] 16대, 경형 주차구획[2.0M * 3.6M] 33대로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여성행복 일반 주차구획 26대와 여성행복 확장형 주차 구획 25대가 포함되어 있음.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니 부족할 수 있음.
○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층 동출입구 근처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구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의 구조형식상 일부 기둥 및 벽체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음.
○ 주차장(지하1)은 데크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오픈된 환기구를 통해 자연적으로 환기시키는 방식임.
○ 지하주차장 램프2의 층고가 2.3미터로 대형 SUV차량, 차량 상부 부착물 설치차량, 화물차량, 생계형차량(탑차), 소형버스 등의 통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경비실은 단지 북측 주출입구 1개소, 1503동과 1504동 사이 1개소, 총 2개소가 있음.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냉,난방 실외기 실 및 외부(지붕 등)에 설치되는 실외기 및 배기설비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 진동, 냄새, 미관저해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1501동 1층 부대시설(어린이집)의 실외기실 및 조경부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동시 상부층 인접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1503동 1층 부대시설(노인정, 관리사무소, 용역휴게실+휘트니센터)의 실외기실 및 옥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동시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1505동 1층에 부대시설(게스트룸,작은도서관)의 옥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동시 상부층 인접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1505동 1층 부대시설(게스트룸,작은도서관)의 PIT층 오배수펌프 가동시 주변세대에 소음이 전달될수 있음
○ 1501동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실에 설치된 에어컨 가동시 인접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단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종류	내용(수, 종류, 위치도 등)
부대시설	주차장	지상6대, 지하495대 총 501대 (장애인주차 17대, 3.39%) (여성주차 51대, 10.18%)
	관리사무소	1개소, 1503동 지하1층
	경비실	2개소, 별동 1개층
복리시설	어린이집	1개소, 1501동 1층
	맘스카페	1개소, 1501동 1층
	용역휴게실	1개소, 1503동 지하1층
	경로당	1개소, 1503동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1개소, 1501,1505동 사이 별동 1개층
	멀티프로그램실	1개소, 1505동 지하1층
	게스트하우스	1개소, 1505동 지하1층
	작은도서관	1개소, 1505동 지하1층
	휘트니스센터	1개소, 1503,1504동 사이 별동 1개층
	소셜다이닝	1개소, 1502,1503동 사이 별동 1개층

[단위세대]

[공통]

○ 카달로그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로, 내부에 기둥과 마감이 돌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영역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기둥 위치는 동일 타입 이라도 상이할 수 있고 천장 마감부위가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도면치수와 안목치수는 마감재 및 시공오차에 따라 실벽 실측치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측벽세대와 측벽세대가 아닌 경우, 세대 내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시 숙지하기 바라며, 동일 타입이라도 세대위치에 따라 치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전, 가구 등 설치 시 반드시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는 대칭형 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됨.

○ 주택형별로 확장 부위와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천연자재 및 인공석재, 무늬목 시트류, 강마루 등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및 가구의 설치공간은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없음

– 주방가구와 고정형 가구 상 · 하부 및 측 · 후면에는 타일 및 도배 등 별도 마감재가 없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 및 강마루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고정형 가구, 거실 아트월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분진방지페인트가 설치 됨.

○ 세대 모든 욕실은 습식욕실로 되어있음.

○ 부부욕실은 변기 및 세면기 구간에 배수구가 없고 샤워부스 내에 배수구가 있는 형태로 일부 구배에 따라 바닥 물고임이 발생될 수 있으며, 샤워부스는 안여닫이로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에 따라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모든 세대에는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음.

○ 침실, 거실 또는 주방 발코니에는 환기설비장치 및 배관 설치로 인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단위세대 타입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욕실환기를 위한 공동연도를 사용하므로 이웃세대의 환기팬 가동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우수홈통 및 배수관이 노출되어 우기 또는 배수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상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전 · 후면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상에 오차 및 하부층, 최상층에 따라 통기관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기 수전과 간섭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 간벽 및 외벽에 면하는 침실의 콘센트는 결로현상 및 소음 전달방지 등을 위해 다른 세대와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급수, 급탕분배기는 화장실(세대욕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음.

○ 수도계량기, 온수미터기, 열량계 등이 세대현관문 주변 PD내에 설치되어 있고, 세대 계량기(급수, 급탕, 난방, 가스, 전기)는 원격 검침방식임.

○ 아파트 특성상 세대 욕실, 주방 및 공용부 PD에 3개층마다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되며, 해당위치에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씽크대 개수대 하부에 난방분배기, 온도조절시스템, 싱크수전 절수기, 음식물탈수기가 설치되어 공간이 협소하므로 해당가구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난방,급수,급탕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수전이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세대 안방 및 거실에는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형별로 배관 경로가 다르게 설치되어 있음.

○ 입주 후 세대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손상시킨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와 복구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세대 주방 환기는 세대별 직배기 방식으로 렌지후드 사용 시 인접세대로 냄새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될 수도 있음. 세대 욕실 환기는 옥상 공동 배기 방식으로 하부 세대의 냄새가 유입될 수 있음.(단, 냄새 역류 방지를 위한 전동댐퍼가 설치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안방 드레스룸 붙박이장, 거실 장식장)는 중소기업자재 사용대상 공사로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됨.

○ 에어컨 실외기 중 일부 제품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품설치 전 실외기 폭(크기)의 확인이 필요함

○ 세탁기와 에어컨 실외기가 동일공간에 근접하게 계획되어 있어 사용상 간섭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세탁기와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안방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어 있어 현재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에어컨 제품의 설치가 가능함.(단, 설치위치는 평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천정형 에어컨 설치는 기존 매립배관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 설치)

○ 또한 기타 침실 및 주방에는 에어컨 설치가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냉방기 설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안방과 거실사이의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 냉매박스 좌우 모서리 기준 15cm 이내의 못박음이 등이 곤란하며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냉매매립배관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음.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 및 복구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음.

○ 단위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설비 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설비 가동 시 소음발생 및 장비점검 및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천정은 마감이 없이 노출되어 있음.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수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기설치 발코니는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와 수전이 간섭되어 수전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음.(손빨래 이용시 등)

○ 각동 3층 이하 세대 세탁기설치 발코니에는 저층부, 고층부 배수관이 함께 설치되어 발코니가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세대 대피공간의 3층부터 10층까지는 전타입 화재시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설치되며, 피난을 위한 디딤발판(접이식 또는 이동식)으로 인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또한 일부 세대는 건축 입면 변화 돌출 및 대피공간의 구조적 문제로 대형 스탠드 타입의 특수형 완강기가 설치됨.

○ 세대 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ALC벽체 포함)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 벽식구조에 비해 소음 전달이 클 수 있으며,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 인근세대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복구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음.(당 현장은 세대 경계벽은 내력벽으로 되어 있음)

○ 세대 내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의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규격 등의 차이로 세대 내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설치 전 실제크기를 확인하여 배치조정 바람. 일부세대 발코니에 드럼세탁기 설치시 내부치수 협소로 배치조정 필요함.

○ 주방가구 상부장, 하부장 내부 전기 콘센트 부위는 장내부 별도 커버가 설치되지 않음.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또는 측면)으로 지나갈 수 있으며,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타입별로 측벽 또는 계단실 외벽 등에 접하는 세대는 구조적 특성상 커텐박스의 길이가 짧을 수 있음.

○ 발코니는 환기가 부족 시 벽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특성상 욕실 및 각종 PD에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욕실(샤워실 포함)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욕조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바닥(거실) 마루 색상은 동일 회사의 생산제품이라도 색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어 우천 및 배수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치』 제14조 2항에 따라 세대현관문의 도어스토퍼 (일명:말발굽)는 설치되지 않음.

○ 안방 분합창 손잡이는 열리는 방향의 창짝에만 설치됨.

○ 세대내 대피공간 창호는 화재시 피난을 위한 창호이므로 가급적 닫힌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평상시 문짝이 열려있을 경우 강풍으로 인한 창호 및 유리 파손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저층부 석재마감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와 외부석재마감 사이 벽체는 도장 마감임.
○ 최상층 세대 발코니 천정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CRC보드)가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등 구조물 설치 시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 세대 주방 후드렌지 상부의 가구장 내부에는 법적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 폭 및 일부 공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벽체 및 바닥에 설치되는 타일의 나누기도는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우물천장 높이는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아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세대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되며 위치와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욕실/현관 등은 바닥 단차로 인하여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목창호에는 손끼임방지재 설치되어 있음.
○ 세대 주방 가전 중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가스오븐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체크 압력 장치를 임의로 조정 시 개폐압력 과다로 인해 파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자는 책임지지 않음
○ 세대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은 비디오폰 시스템과 연동됨.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수도계량기함, PD점검구가 신발장 내부 또는 하부에 설치되어 있고 씽크대 개수대 하부에 난방분배기, 온도조절시스템, 싱크수전 절수기, 음식물탈수기가 설치되어 공간이 협소하므로 해당가구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난방,급수,급탕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경계벽은 경량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일반 벽식구조에 비해 소음전달이 클 수 있으며, 벽면에 중량물 설치 시[(예)벽걸이 TV 등] 벽체 드릴링, 못 박기 등에 의한 벽체가 파손될 수 있고 벽에 매립 되어있는 전기, 통신, 설비 등의 배관 배선을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기 바람.
○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있고, 싱크대 개수대 하부에 난방분배기, 후드 상부장에 후드배관 등이 설치되어 사용 및 점검 시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주방가구 상 · 하부장 뒷면과 바닥에는 합판마루, 타일, 몰딩, 걸레받이, 도배 등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세대 주방가구 바닥은 난방배관 동선 확보를 위하여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은 침실1(벽걸이형) 및 거실(스탠드형)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각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음.
○ 대피공간 발판은 세대 전체에 설치되며, 완강기는 각동 3~10층 세대만 설치됨.
○ 단위세대 타입의 월패드는 래핑지 마감판으로 돌출시켜 시공되었음.
○ 발코니는 서비스공간으로 환기가 부족하면 마감향상을 위해 시공된 CRC보드에 결로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최상층 발코니 또는 입면변화구간의 발코니 천정은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천정고가 낮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라 냉난방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 외창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창 설치로 창호 및 발코니 내부에 실내 · 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시로 창을 열어 자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동절기에 음식조리, 빨래건조, 가습기, 건조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결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 내 대피공간에는 유사구조, 임의 시설물 등을 설치 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이 불가함.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 그릴의 단차에 의해 실외기 하부에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내부 설치로 인한 발코니 공간 협소 및 일부 도어 개폐시 간섭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중 폭 950mm 이상 제품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품설치 전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 시 벽체 드릴링 작업에 따른 전기, 통신, 에어컨 매립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작업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기 바람.
○ 에어컨 형태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이 세탁실 외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주 후 가동 시 세탁실과 실외기실 창문이 열려있을 경우 소음과 열풍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또한 기타 침실에는 에어컨 설치가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냉방기 설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세대 안방 및 거실에는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 경로가 다르게 설치되어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 동일 타입이라도 내측과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난방 및 급탕 공급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주방에 가스공급은 도시가스로 공급됨.
○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주방에 면한 발코니에 설치 됨.
○ 모든 세대 세탁실 발코니 천정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세대 급 · 배기를 위한 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됨에 따라 미관저해, 발코니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바닥 난방 및 급탕은 지역난방 공급되어 열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세대별 사용요금이 발생됨.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매립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설치방식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구간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시스템루버를 개방후 사용하여야 하고, 실내기 드레인(물빠짐) 배관이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실외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 욕실 천장 내부의 PD벽체에 3개층당 1개소 공용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홀(스리브)이 설치되어 있음.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또는 측면)으로 지나갈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 하부에 기계실, 펌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승강로에 면한 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시스템은 계절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환기 필터 교체 알람시 교체 필요(개별 별도 구매 후 교체)
○ 침실, 거실 또는 주방 발코니에는 환기설비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타입 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 수 있음)

[A1-5BL]

○ A1-5BL은 66A, 70형(70A,70B,70C,70D)의 세탁실은 미서기 도어로 설치되었으며, 세탁기 크기에 따라 세탁기 설치 또는 해체시 미서기 도어 창짝의 해체가 필요할 수 있음.
○ A1-5BL은 80E Type 단위세대 발코니에 수납공간이 있음.
○ 각 층별 1세대에 한해 현관천정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할 수 있음.
○ 세대 내 합성수지제 창호 손잡이는 자동장금장치로 설치되었으며(단, 안방 분합창, 주방창, 66A/70형 세탁실창은 제외되며 크리센트로 설치됨), 내외창의 손잡이는 내창은 핸들형, 외창은 그립형으로 설치됨.(단, 주방창은 제외되며 , 66A/70형 세탁실창과 분합창은 열리는 방향의 창짝에만 그립형 손잡이가 설치됨)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84A 타입은 팬트리에 설치됨)
○ 실외기실은 세대 외부 공간에 별도의 창호가 없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내 창호를 개방 시 에어컨 실외기 사용에 따른 소음 · 진동 · 열원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의 세탁실 등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됨.

[A1-12BL]

○ A1-12BL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중공슬래브 무량판구조로, 내부에 기둥과 마감이 돌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영역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기둥이 동일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84타입의 발코니3(실외기실)은 서울시 심의규정준수로 발코니 창호가 미설치 된 부분이 있으며, 발코니 창이 없는 오픈 발코니로 계획 되어 있고, 해당 오픈발코니 부위의 난간은 1.2M로 계획되어 있음. 동절기 노출된 배관의 동결이 발생할 수 있음.
○ 64A, 74C, 74D타입은 지붕이 없는 오픈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고, 해당 오픈발코니는 콘크리트 턱 0.3M, 난간 1.2M로 계획되어 있음. 동절기 노출된 배관의 동결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면 디자인에 따라 발코니2 위치는 타입별 · 층별로 상이하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확장불가능하며, 벽이 없는 난간형식임

1504동 발코니2의 위치	구분	2, 4, 6 호 (74C)	3, 5 호 (74D)	1505동 발코니2의 위치	구분	1, 3, 5호 (64A)	2, 4, 6 호 (64A)
	홀수층	침실2	발코니1		홀수층	발코니1	거실
	짝수층	거실	거실		짝수층	거실	발코니1

○ 64A타입 홀수층 1호, 3호, 5호 세대는 발코니2가 발코니1에 면하게 설치되고, 2호, 4호, 6호 세대는 발코니2가 거실에 면하게 설치됨.

○ 64A타입 짝수층 1호, 3호, 5호 세대는 발코니2가 거실에 면하게 설치되고, 2호, 4호, 6호 세대는 발코니2가 발코니1에 면하게 설치됨.

○ 74C타입 홀수층 2호, 4호, 6호 세대는 발코니2가 침실2에 면하게 설치되고, 짝수층 2호, 4호, 6호 세대는 발코니2가 거실에 면하게 설치됨.

○ 74D타입 홀수층 3호, 5호 세대는 발코니2가 발코니1에 면하게 설치되고, 짝수층 3호, 5호 세대는 발코니2가 거실에 면하게 설치됨.

○ 84타입은 외창이 없는 노출된 발코니, 그 외 타입은 루버창이 설치된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함.

○ 1503동 101호 거실에 발코니2 우수배관으로 인하여 소음을 발생 할 수 있음.

○ 루버창이 설치된 타입은 실외기 작동시 루버를 개방 후 사용해야하며, 소음 · 진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 될 수있음.

○ 아트월 벽면은 경량칸막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벽걸이TV설치를 위해 해당위치에 합판(1200X900)으로 보강되어 있음.

○ 84B타입(3세대)은 계량기(급수, 급탕), 열량계(난방)가 및 전력량계가 세대당 2개 설치되어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되고, 실외기 2개소, 전열교환기는 발코니 1개와 작은방 1개 설치되어 소음이 예상됨.

○ 84B타입(3세대)은 현관, 씽크대가 세대당 2개 설치되어 생활의 불편 및 소음이 예상됨.

○ 84B타입 현관문 뒤편 배관으로 인해 유수소음 및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세대주방 렌지후드는 공동배기가 아닌 직접배기시스템이 적용되어, 바람이 강할 때 렌지후드 작동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세탁기설치 발코니에 시공된 우수관 및 배수관이 시공상 오차 및 하부층, 최상층 통기관 설치 등으로 인하여 세대별로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고, 수전과 간섭 시 수전 방향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우수, 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동 5층 이하 세대 세탁기설치 발코니에는 저층부, 고층부 배수관이 함께 설치되어 발코니가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각 층별 1세대에 한해 현관방화문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1504, 1505동 노출 발코니)

○ 타입별로 난방코일이 다를 수 있고 주방하부와 팬트리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64, 74타입 세대는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은 마련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지정된 공간에 실외기를 설치 해야 하므로(발코니 외부에는 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음), 입주 시 실측을 통한 실외기 설치가 요구되며,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게 배출시키기 위해) 실외기 하부에 높임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으며, 시스템루버에 최대한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조망권, 일조권 등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84타입은 건축구조 및 세대 미관상 벽이 설치되어 있어 실외기 설치 시 창문해체 및 발코니 외부설치 시 불편 할 수 있음

○ 일부 실외기실은 세대 외부 공간에 별도의 창호가 없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내 창호를 개방 시 에어컨 실외기 사용에 따른 소음 · 진동 · 열원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의 세탁실 등기구는 천정형으로 설치됨.

기타 유의사항

○ 위례 A1-5BL의 명칭은 위례포레샤인 17단지, 위례 A1-12BL의 명칭은 위례포레샤인 15단지로 입주자는 시공사 브랜드 사용을 우리공사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A1-5BL 및 12BL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예비인증 되었음.**

○ 팸플릿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전용면적별 대표평면으로 제작되었으며 (A1-5BL은 66A,75A,84A, A1-12BL은 64A,74A,84A) 내부 시설마감은 자재품절, 제조회사 도산,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인허가 관청의 명령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시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동일 단지 내 동일한 평면유형이라 할지라도 색상과 형태가 다소 다를 수 있음

○ 광고, 홈페이지 홍보물 등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청약 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 [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위치, 창호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피난사다리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 및 사전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포장,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평면도의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 오기의 정정, 성능개선, 품질제고를 위해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성능, 제품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마감재료 재질, 조경 등)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사이버 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지구설계,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변, 색채, 재질, 조경)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발주처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준공 후 구조물 및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점용료는 입주자 부담으로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법개조로 인하여 화재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내에 출입 할 수 없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촬영세대 및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사이버 모델하우스 촬영세대 및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촬영세대 동, 호수에 대하여는 도배, 마루, 가구, 도장, 목창호, 타일을 재시공할 예정이며, 상기 품목 이외에 대하여 교체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촬영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통신월패드, 현관도어폰은 모양,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대표평형만 촬영) 및 팸플릿 상 마감재 수준을 필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본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의 동 · 호수는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므로 신청인이 주택의 방향, 평면 배치, 단지배치 등 아파트 배치 구조와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입주예정자가 납부해야 함.

○ 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잔금은 은행에서만 수납이 가능하며 관리사무소 및 주거복지센터에는 납부 불가함.

○ 입주금(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용 포함)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비밀번호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입주청소 등 각종 개인목적을 위한 열쇠불출(비밀번호 수령)이 불가하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입주개시시작일 이전에는 열쇠불출(비밀번호 수령)이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하자관련 문의 및 하자접수는 입주지원센터 내 하자상담실 및 하자119센터(운영기간: 입주개시 3일전 ~ 약 1년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후 하자접수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짐(단지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지원센터 및 하자119센터 등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단지 내 공용공간(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운영되며, 운영기간 중 장소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은 청구 할 수 없음.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주택구입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주택가격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세는 계약자가 잔금 납부일과 건물(임시)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구청에 분양계약서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지참하시어 자진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함.

○ 공유대지 지분등기는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확정시 공유대지 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첨 이후 공유대지지분 등기 시까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주소변경요청이라는 제목과 해당 주택동. 호수, 연락처를 부기 기재하시어 팩스(02-3410-7514)송부하여 주시면 변경된 주소로 공유대지지분 이전등기 안내문을 발송해 드림.

○ 건물보존등기 완료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2주 이내 등기소에 신청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2~6주 후에 완료됨. 일부 대출상품은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실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잔금납부 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람.

○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교부신청은 우리공사 명의의 건물보존등기 접수 후에 발송하는 건물등기안내문을 수령한 후에 방문신청하시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교부는 건물보존등기가 완료된 후에 교부할 수 있음.

○ 토지보존등기는 전체 사업지구가 준공(택지조성사업 준공)된 후 가능하므로 사업지구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 토지등기가 입주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1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아래 공시내역은 실제 분양가격 기준으로 작성됨

(단위: 천원)

항목		세분류	A1-5BL		A1-12BL	
			총금액	공급면적 ㎡당	총금액	공급면적 ㎡당
택지비 (4개)		택지공급가격	414,358,560	3,213	127,011,621	3,260
		기간이자	60,709,512	471	18,188,136	467
		필요적경비	–	–	–	–
		그밖의 비용	4,638,401	36	1,275,427	33
택지비 계			479,706,473	3,720	146,475,184	3,760
공사비 (51개)	토목 (13개)	조경공사	8,155,002	63	2,382,443	61
		토공사	2,293,823	18	1,095,173	28
		흙막이공사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옹벽공사	–	–	–	–
		석축공사	28,942	–	36,945	1
		우오수공사	613,393	5	274,642	7
		공동구공사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	–
		도로포장공사	635,419	5	189,328	5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
		부대시설공사	65,326	1	27,011	1
		소 계	11,791,905	92	4,005,542	103
	건축 (23개)	공통가설공사	5,235,111	41	1,806,922	46
		가시설물공사	3,486,422	27	1,077,221	28
		지정및기초공사	387,449	3	236,192	5
		철골공사	–	–	–	–
		철근콘크리트공사	53,466,934	415	14,955,358	384
		용접공사	–	–	–	–
		조적공사	2,237,364	17	675,724	17
		미장공사	3,071,774	24	842,008	22
		단열공사	5,710,018	44	1,542,734	40
		방수.방습공사	4,815,625	37	1,315,134	34
		목공사	6,781,849	53	238,650	6
		가구공사	5,552,967	43	1,040,026	27
		금속공사	4,590,941	36	1,625,882	42
		지붕및홈통공사	356,940	3	203,084	5
		창호공사	8,899,128	69	2,882,040	74

항목		세분류	A1-5BL		A1-12BL	
			총금액	공급면적 ㎡당	총금액	공급면적 ㎡당
		유리공사	3,300,798	26	1,072,555	28
		타일공사	2,837,645	22	915,105	23
		돌공사	4,391,028	34	1,622,462	42
		도장공사	3,308,456	26	883,223	23
		도배공사	2,022,657	16	613,671	16
		수장공사	5,591,235	43	1,433,510	37
		주방용구공사	8,199,621	64	1,482,728	38
		잡공사	5,229,729	40	2,388,231	61
		소 계	139,473,691	1,083	38,852,460	998
	기계설비 (9개)	급수설비공사	2,244,955	17	766,453	20
		급탕설비공사	1,441,997	11	520,372	13
		오배수설비공사	4,441,182	34	933,191	24
		위생기구설비공사	4,296,038	33	1,204,974	31
		난방설비공사	6,607,163	51	1,812,918	47
		가스설비공사	998,119	8	289,735	7
		자동제어설비공사	515,398	4	82,782	2
		특수설비공사	6,736,380	52	1,791,533	46
		공조설비공사	–	–	–	–
		소 계	27,281,232	210	7,401,958	190
	그밖의 공종 (4개)	승강기공사	3,288,497	25	1,001,658	26
		전기공사	20,312,640	158	6,074,838	156
		정보통신공사	9,661,119	75	3,204,557	82
		소방설비공사	14,455,894	112	4,025,198	103
		소 계	47,718,150	370	14,306,251	367
	그밖의 공사비 (2개)	일반관리비	5,596,145	43	1,882,236	48
		이 윤	2,269,799	18	795,716	20
		소 계	7,865,944	61	2,677,952	68
간접비 (6개)		설계비	4,117,627	32	1,320,612	34
		감리비	5,796,652	45	3,600,434	92
		분담금 및 부담금	3,536,029	27	965,101	25
		그 밖의 사업비성경비	23,303,018	181	7,057,138	181
		일반분양시설경비	–	–	–	–
		보상비	–	–	–	–
		소 계	36,753,326	285	12,943,285	332
그 밖의 비용 (1개)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더해지는 비용	25,359,500	197	6,747,980	173
건축비 계			296,243,748	2,298	86,935,428	2,231
분양가격 계			775,950,221	6,018	233,410,612	5,991

※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비용구분		금 액	
		A1-5BL	A1-12BL
택지비 가산비	기간이자	60,709,512	18,188,136
	말뚝박기 공사비	3,239,781	937,937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1,398,620	337,490
	계	65,347,913	19,463,563
건축비 가산비	완전무량판구조(지상)	10,767,607	3,288,152
	주택성능등급	4,306,200	–
	법정초과복리시설	2,197,280	978,818
	친환경 주택건설	2,374,104	717,630
	인텔리전트 설비	5,714,309	1,763,380
	계	25,359,500	6,747,980

※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분양가격 기준으로 작성됨.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액

지구 및 블럭명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 산술평균 총액(단위:천원)
위례지구 A1-5BL	㈜나라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414,358,560
위례지구 A1-12BL		127,011,621

15 주택성능등급 표시 및 녹색건축(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A1-5BL]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위례 A1-5BL 아파트
2. 신 청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3.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4. 평 가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준수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 소방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한 국 감 정 원 장

* A1-12BL은 법정세대 미만으로 해당없음

단지명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A1-5BL	(아래 참조)	(아래 참조)
A1-12BL	(아래 참조)	(아래 참조)

A1-5BL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 건 축 물 명 : 위례 A1-5BL 아파트
- 건 축 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 준공(예정)일 : 2021.01.31.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 층 수 : 지하2층, 지상25층
- 연 면 적 : 196,040.76㎡
-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 설 계 자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 인 증 번 호 : 2018-127
- 인 증 기 관 : 한국감정원
- 유 효 기 간 : 2018.04.27.~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 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

인증 등급
- 인 증 등 급 : 우수(그린2등급)
- 인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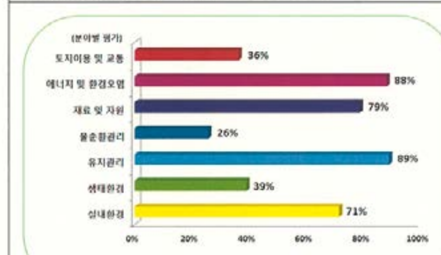

종합등급 ★★★☆

2018년 04월 27일

한 국 감 정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1-5BL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 건축물명 : 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공동주택 건설공사
- 준공연도 : 2021년 02월 25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 층 수 : 지하2층 / 지상25층
- 연 면 적 : 196040.76(㎡)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 설계자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개요
- 인증번호 : 18-주-예-1+-0019
- 평가자 : 김종희
-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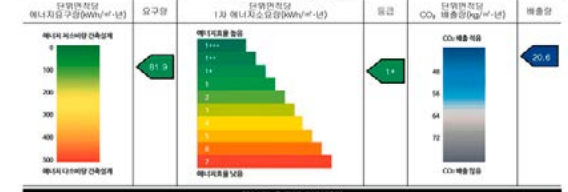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3.8	55.7	41.9	9.3
급탕	30.7	35.5	20.2	5.9
조명	7.4	7.4	20.5	3.5
환기		4.0	11.1	1.9
합계	81.9	102.6	99.7	20.6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4월 20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A1-12BL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 건 축 물 명 : 위례지구 A1-12BL 아파트
- 건 축 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 준 공 (예 정) 일 : 2021.06.30.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12BL
- 층 수 : 지하2층, 지상24층 (394세대)
- 연 면 적 : 58,332.25㎡
- 건축물의주된용도 : 공동주택
- 설 계 자 :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 인 증 번 호 : 2018-175
- 인 증 기 관 : 한국감정원
- 유 효 기 간 : 2018.06.05. ~ 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 등급
- 인 증 등 급 : 우수(그린2등급)
- 인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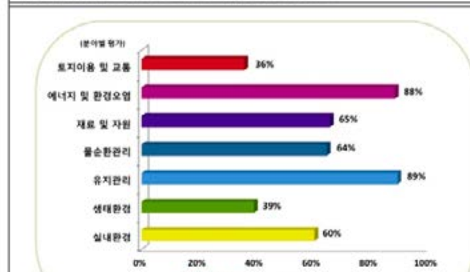

종합등급 ★★★☆

2018년 06월 05일

한 국 감 정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1-12BL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 건축물명 : 위례택지개발지구 A1-12BL 공동주택 건설공사
- 준공연도 : 2020년 12월 04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2BL
- 층 수 : 지하2층 / 지상24층
- 연 면 적 : 58338.10(㎡)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 설계자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개요
- 인증번호 : 18-주-예-1+-0020
- 평가자 : 김종희
-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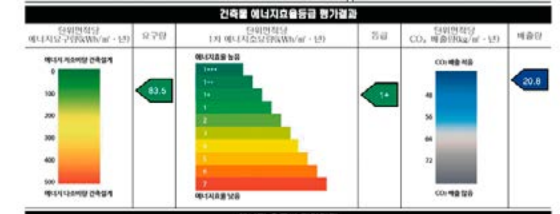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4.3	59.0	44.7	9.9
급탕	30.7	39.1	28.9	6.5
조명	8.5	7.0	19.2	3.3
환기		2.4	6.5	1.1
합계	83.5	107.5	99.3	20.8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8년 04월 24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16 분양일정 안내

구분		일정	신청장소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		2020.11.19.(목)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문화일보, 한겨레 ※ 사이버견본주택 : 2020.11.19.(목) 15시 이후 예정	
특별 공급 청약 접수	기관추천, 철거민 (회현제2시민아파트)	2020.11.30.(월) ~12.01.(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인터넷 청약** (09:00~17:30)
	다자녀 특별공급	2020.11.30.(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20.12.01.(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 공급 청약 접수	제1순위	2020.12.10.(목)	·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서비스(APP설치)	**인터넷 청약** (08:00~17:30) 또는 **가입은행 청약** (09:00~16:00)
	제2순위	2020.12.11.(금)		
당첨자 및 동 · 호수배정 발표		2020.12.16.(수)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 ·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서비스(APP설치)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2020.12.21.(월)	·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등기우편 접수** (2020.12.21. 소인분 포함)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게시		2021.03.02.(화)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	
계약기간		2021.03.15.(월) ~ 03.24.(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중도금 납부기한		2021.05.14.(금)		
입주자사전점검(예정)	A1-5BL	2021.06.(예정)		
	A1-12BL			
입주개시(예정)	A1-5BL	2021.08.(예정)		
	A1-12BL			

※ 상기 분양일정은 건축공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지정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600%에 달할 경우 2순위는 더 이상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단속강화 및 처벌규정

최근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국세청, 한국감정원,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결혼 등에 의한 불법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환수하는 등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청약통장을 사고 팔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례] 평소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부어왔던 A씨.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약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포기하던 차에 거리 전단지에 청약통장을 산다는 업자에게 전화해 웃돈을 받고 통장을 팔게 되는데...

☞ 청약통장 거래는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행위 이익의 3배 금액이 3천만원 초과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내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원인무효로 인해 소유권이 환수되므로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하게 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도 될까요?

[사례]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계약을 맺은 A씨.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아 명의변경을 기다리는 동안 '프리미엄'이 올라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

☞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의 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는 주택법 6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며 주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한 처벌규정**

○ **(입주자 저축증서 거래 · 알선 금지)**청약통장의 거래,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 위반자에게는 1) 주택공급계약 취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행위 이익의 3배 금액이 3천만원 초과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3)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제한
※ 근거 규정 : 「주택법」 제65조, 제10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 **(주택 불법전매 금지)**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거래, 알선에 대한 처벌규정
- 위반자에게는 1) 주택공급계약 취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규정 : 「주택법」 제64조, 제101조